

II. 손해배상청구사례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 2001. 4. 19.자 판결 (2000나985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4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이 본부장 및 수사본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선일보사와 정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문제된 각 사설에서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 등 검사 개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라며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각 사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특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정은은 19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과정 중 진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강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료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295~30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0나985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이

2. 이

3. 주

4. 길
5. 윤
6. 김
7. 조
8. 최
9. 한
10. 김
11. 이
1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정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1. 3. 15.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2001.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나.항 기재기간 안에 위 나.항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설'란에 별지 제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9, 14,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옥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 는 본부장, 원고 이 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 은 피고 회사의 논설위원이다.

나. 전 대검찰청公安부장이던 진 는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 와 강 의 집과 대검찰청 공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진 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결과 위 사건은 ‘진 가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 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수사과정에서 진 가 강 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전화를 강 에게 전하였고, 진 와 강 이 그 휴대전화기로 수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마. 한편, 원고 이 등은 위 수사본부에서 위 수사내용과 관련된 일문일답식의 브리핑을 가끔 하였는데, 1999. 7. 27. 오후에 진 가 강 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999. 7. 29. 오전에는 강 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 가 강 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 ... 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그 때 그 통화내용이 감청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위 통화내용은 감청이나 비화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희복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던 통화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사. 피고 정 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보도를 참작하여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 사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절차, 편집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별지 제1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 이 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피고 정 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절차를 거친 다음 그 사실의 제목을 『휴대폰도 도청되나』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고쳐 별지 제2 사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실을 쓴 다음 내부 편집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별지 제2 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실어 배포하였다.

2. 불법행위의 성립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정 이 피고 회사의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원고들이 파업유도 관련 수사과정에서 강 과 진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한 별지 제1 사실과 제2 사실을 실어 배포함으로써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사실에서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원고 등 검사 개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위 각 사실의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데 그 전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룬다.

(2) 피해자의 특정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기사 자체만으로는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별지 제1 사실과 제2 사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 와 강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

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특정된다 할 것이다.

(3)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가) 판단기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사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

(나) 별지 제1 사실

별지 제1 사실은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와 강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검찰이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 와 강 이 주고 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바, 비록 위 사실 중에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은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2 사실

다음으로, 별지 제2 사실은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 아래, 검찰에 의해 진 와 강 간의 통화내용이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공개되었고, 통화내용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혔으며,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실의 내용 중에 “일부 시민들이 ‘혹시 휴대폰도 도청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었다”거나 “검찰의 ‘감청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이 행여 일반에게 휴대폰 통화도 엿들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표현 역시 일반 독자가 사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실의 제목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의 내용 중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제2 사실에 의하여서도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별지 제1 사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검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휴대전화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위 사실 중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거나 불법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내용의 진실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시, 위 사실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

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사실에 터잡아서 위 사실내용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위 사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 와 강 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는 등의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터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별지 제1 사실이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실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위 사실의 신문게재 시점과 신문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한편으로 피고들은 원고 이 로부터 신문 가판에 실

린 별지 제1 사설의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나서 곧이어 별지 제2 사설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배포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제1 사설이 실린 신문이 배포된 1999. 7. 3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제1 사설이 신문에 게재된 크기, 게재 면 수,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 제2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 의 연관성, 독자들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나,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채무명의를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위 3. 가.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은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을 앞서 인용하기로 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9.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제1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1999. 7. 31.자 신문의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를 감청하였다거나 감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일보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

하여 위 파업유도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제2 정정보도문〉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신문사에서는 지난 1999. 7. 31.자 신문 사설에서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과정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들인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간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적으로 감청 또는 도청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사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위 진 전 대검公安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간의 휴대폰 전화를 불법적으로 감청하거나 도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사에서는 위 보도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던 특별수사본부의 검사들이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왔던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본 신문사의 위와 같은 왜곡보도로 인하여 특별수사본부에 몸담고 있던 12명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9. . .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신문사 및 위 사설을 집필하였던 본 신문사 정 은 연대하여 위 12명의 검사들에게 각 3억원씩 총 3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신문사가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사설은 허위의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을 두고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단정정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1. 4. 25.자 판결(2000가합6413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001년 4월 25일 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사실을 확정보도한 대한매일을 비롯한 4개 중앙일간지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사들에게 총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이 ‘가수 조 또 대마초 적발’,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등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부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에 대한 소변 검사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 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원고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의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으로 나타나자, 원고를 긴급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사를 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피의사실 관련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개월 전부터 복용하여 오던 한약에 대마성분이 들어 있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정밀검사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원고를 석방하고 검찰은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7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207~217)을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들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자 신청을 취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64132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 경 현

피 고 : 1.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차 일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 창 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 수 근, 송 시 섭,

조 성 극, 김 두 식, 최 상 경

3.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김 영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인 철

5.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황 선 조, 송 병 준, 최 윤 기

지배인 이 정 재

6.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조 면 식, 손 석 봉

변 론 종 결 : 2001. 3. 21.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9. 9.부터 2001. 4. 25.까지

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원고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양천경찰서는 원고가 조사 요청한 한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결과,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등으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을 확신할 수 없어, 같은 달 7. 오후에 원고를 석방하였고, 검찰은 같은 해 7. 27. 무혐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원고가 석방된 후 피고들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자, 피고 문화방송사는 같은 달 8. 인터넷 뉴스에 경찰이 원고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대마 음성반응이 나와 그를 석방하였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같은 해 7. 4. 18:30 정규 뉴스시간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는 같은 달 7.에,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같은 달 8.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와 시청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들이 게재한 기사들은 그 제목을 『가수 조 또 대마초 적발』(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가수 조 씨 또 대마초』(피고 중앙일보사), 『조 씨 또 대마법 위반』(피고 한겨레신문사), 『조 또 대마초』(피고 한국일보사), 『가수 조 또 대마초』(피고 세계일보사), 『가수 조 대마혐의로 5번째 적발』(피고 문화방송사)로 하여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 문화방송사는 ‘혐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반론 보도문에서는 ‘조 또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감뉴스에서는 위와 같은 단정적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전력을 포함한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다만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는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고 하여 본문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 독자 및 시청자들은 먼저 위 기사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읽거나 들어 넘어가기 쉽고, 더욱이 본문에 실행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을 들추고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한국일보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익성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보도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여 한 위 각 범죄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실성

피고들은 보도 당시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원고가 이번에도 대마초를 피웠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일보사는 한약을 복용해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원고의 항변 사실을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그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나, 항변사실을 포

함하여 그 기사 전체를 살펴보아도 역시 원고가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당성

1) 피고 한국일보사, 문화방송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이 2000. 6. 5.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항변사실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원고와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원고측도 더 이상 그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원고가 동종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취재하여 한 피고들의 보도는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2호증, 을사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소속 기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원고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오는 등의 수사상황의 일부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함, 수사기관인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로 보려면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여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박 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도 음성반응이 나오고 있었던 점, 원고의 항변사실은 다음날 한의사에 대한 사실확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보도 당시의 구속영장도 신청되지 아니한 시점인 점, 원고의 동종 전력이 4차례나 된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므로 이를 들추어 보도하려면 더욱 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그 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문화방송사는 언론사는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죄보도가 공익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속하게 보

도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개 언론사간의 경쟁에 의하여 정밀감정결과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보도는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보도기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므로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앞서 본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세계일보사는 서울시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거하고 양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대한매일신보사는 다른 피고들의 취재경위 진술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그 보도에 상당성이 없다).

(라) 정당행위

피고 중앙일보사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 보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그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계획하고 있던 공연일정 등의 취소로 인하여 입었을 영업상의 손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크기, 보도 횟수, 보도 이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했는지 여부,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들의 지위 및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한겨레신문사는 각 금 10,000,000원, 피고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세계일보사, 문화방송사는 각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0. 9. 9.부터 그 이행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4. 2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4. 25.

재판장 판사 안 영 료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가수 조 씨(일산 구)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크라운 호텔 객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등 지난 91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2. 피고 중앙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 씨 또 대마초

인기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다섯 번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 C호텔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1, 95, 97년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으며 올해 1월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3. 피고 한겨레신문사 기사내용〉

제목 : 조 씨 또 대마법 위반

〈나의 옛날 이야기〉 〈꿈에〉 등을 부른 가수 조 (사진) 씨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다섯 번째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조씨가 지난 1일 부산시 K호텔 객실에서 친구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어 이날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4. 피고 한국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 일산구 동) 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1일 공연차 묵었던 부산크라운호텔 객실에서 박모 씨 등 2명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조씨는 그러나 “최근 한약을 복용해 대마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6개월 복역 후 올해 1월 21일 출소하는 등 같은 혐의로 5번째 적발됐다.

〈5. 피고 세계일보사 기사내용〉

제목 : 가수 조 또 대마초

서울양천경찰서는 5일 가수 조 씨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C호텔 객실에서 선배 3명과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꿈에’를 불러 인기를 끌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991년 이후 4차례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6. 피고 문화방송사 방송내용〉

제목 : 가수 조 대마혐의로 5번째 적발

‘꿈에’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지난 1일 부산 범일동 모호텔의 객실에서 남자동료 3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 91년 이후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되긴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번번이 구속됐는데 작년 7월에도 정역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양성반응 즉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조씨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1. 피고 대한매일신보사

제목 : 가수 조 씨 대마초 무혐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가수 조 가 이틀만에 무혐의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씨의 혈액을 보내 정밀분석한 결과 대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2. 피고 중앙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6월 6일자 23면의 ‘인기가수 조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그 후 조씨를 무혐의로 석방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씨의 혈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3. 피고 한국일보사

제목 : 바로잡습니다

가수 조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4. 피고 세계일보사

제목 : 조 씨 ‘대마초’ 무혐의

가수 조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본보 6월 6일자)에 대해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판정돼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6일 밝혀왔습니다.

5. 피고 문화방송사

제목 : 가수 조 씨 대마초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지난 달 6일 문화방송은 ‘조 씨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가수 조 씨가 마치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충분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이 이를 보도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국과수에 의한 정밀감정결과 대마초 음성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표현은 특정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자 판결 (98가합14917)

서울고등법원 2001. 5. 17.자 판결 (2000나18822)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채영수)는 2001년 5월 17일 이 월간조선 기자가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작성한 기사내용은 전제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인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 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써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되었던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광고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피고 정은 '월간 말' 1998년 12월호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 결 문

사 건 : 98가합1491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 고 : 1. 주식회사 월간 말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대표이사 박 출 열

2. 정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주식회사 월간 말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2000. 2. 16.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0.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년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조선일보사라고만 한다) 출판국 월간조선부에 계약기자로 입사하여 현재 월간조선부에 근무하는 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이하 월간 말이라고만 한다)은 도서잡지 출판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보적 시사종합지를 표방하는 월간지인 '월간 말'을 발간하고 있으며, 피고 정은 피고 월간 말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경위 및 내용

(1)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

통일원은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사이에 MBC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통일 캠페인 광고를 하였다.

① 라디오 광고 '통일이 되면'

여성 나레이터의 대사 : "통일이 되면 달라질 세상. 어서 보고 싶으시죠? ... (중략) ... 50년 넘게 다른 나라처럼 살아왔잖아요.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 (중략) ...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부터 하나되는 민족공동체 통일입니다."

②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

농구선수 우지원과 미스코리아 한성주의 대화 : "애틀랜타에서 북한 선수를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인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 같더라구요. 참 반갑고 친해지고 싶어요.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요.", "(중략) 알고 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린데 마음의 거리는 북극보다 멀어요. 우리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야겠어요."

나레이터의 대사 :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통일의 길도 멀지 않습니다."

③ 텔레비전 광고 : '우리는 하나'

가수 이선희의 노래 가사 :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하나가 되죠.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나눕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아요."

(2)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실린 원고 작성의 기사

원고는 위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광고의 취지와 제작경위 등을 취재한 다음 이에 관한 기사

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하게 되었는데, 그 기사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피고 정 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위 통일 캠페인 광고의 내용 중에는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② 수도와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연장하면 국호도 바뀔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오해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③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문제가 있다. 즉 과거 반공교육에서 예컨대 빨갱이라고 뿔달린 도깨비 그림으로 묘사했던 것은 북한집권층을 그렇게 묘사했을 뿐 주민들은 오히려 처량하고 험박은 모습으로 그려서 그림을 보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통일을 해 불쌍한 동포들을 구해내자’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위 광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④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온 데 비하여 북한이 정반대로 무력 적화통일을 지향해 왔고, 남북대화도 항상 북한측이 구실을 만들어 단절해 왔으며,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통일이 지연되는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어 문제이다.

⑤ 위 통일 캠페인 광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교수가 집필한 <나는야, 통일1세대>라는 책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를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책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 인권 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북한의 국가를 그대로 소개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을 실고 있는 등 어린 독자들에게 그릇된 통일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고, 그리하여 위 광고들은 통일원이 3억8천만 원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이 사건 제1기사

피고 정 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월간 말> 1998년 1호의

제 136면부터 제145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 라는 월간조선 이 기자의 정신상태』

② 작은 제목 :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 캠페인』

“이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통일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 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기자가 97년 6월 28일 빅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

③ 본문 :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기사

조선일보사는 1998. 10. 19. 자신이 발간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의 제206면 이하에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소위 최장집에 대하여, 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저술된 내용 중 몇몇 표현을 인용하여 그의 6·25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그 직후부터 위 최장집의 6·25 전쟁관, 나아가 그 사상문제까지 쟁점화되어 위 최장집의 해명과 공직으로부터의 사퇴를 요구하는 측과, 그와 같은 위 <월간조선>의 기사가 논문의 전체 취지와 문장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발췌된 부분적인 표현에 터잡아 전체적으로 위 최장집의 의도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를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특정인의 ‘색깔’에 대한 표적보도를 통한 이른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정 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1998년 12월호 제93면부터 제97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② 작은 제목 : 『병리학적 심리분석 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

③ 본문 :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최장

집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의 과정에서 조선일보사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및 월간지 〈월간조선〉을 통하여 보인 태도에 관하여는 정신분석학을 통한 병리학적 심리분석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선일보의 기왕의 기사나 논설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해방 직전까지 몰두한 친일행각에 대한 원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공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1980년 ‘광주민중화운동’을 ‘무정부상태의 폭동사태’, ‘광주시민’을 ‘난동자’로 매도하는 반면 그들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을 ‘구국의 영도자’로 찬양하는 등 자신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왔다고 한 다음,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작은 제목에 이어서 그런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의 징후는 조선일보 이 기사가 쓴 글에서도 감지되고, 한편 이른바 최장집 사건을 불러 일으킨 월간조선 우 기자에게서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는데, 사디즘은 타인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증세를 말하고, 사디스트는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쾌락의 절정을 느끼므로 ‘특정한 이론을 신봉하거나 탐닉하지 않는 탄력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사상 검증을 통해 쓰러뜨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일이 없으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과 그렇듯 거두절미한 대목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는 지적 횡포만 있으면 된다고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는 월간조선 이 기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는 1997년 ‘이 교수 죽이기’에서 우 기자의 거의 흡사한 방식을 썼다. 먼저 채택한 비법은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기자의 ‘말장난’에 줄지에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린 이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에서 하마터면 공안당국에 구속될 뻔하기까지 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독자를 오도할 악의적인 의도하

에 제목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모욕적·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가) 용공분자 부분

피고 정 ○은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 캠페인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 ○기자의 정신상태』라는 큰 제목을 표기함으로써 일반독자에게 원고가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사상적 문제 부분

피고 정 ○은 같은 기사에서 위 큰 제목 아래 “이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표기한 바, 원고는 자신의 기사에서 한 번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마녀사냥 부분

피고 정지환은 역시 큰 제목 아래 “이 ○기자가 97년 6월 28일 박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자신의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라고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박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은 극우단체로, 대한민국 검찰을 극우단체와 함께 마녀사냥을 하는 집단으로 모욕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비이성적 인간으로 해석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용공분자 부분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그 기사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통상 제목은 간략하고 단적으로 내용을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문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거나 독자에게 단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정 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 기사의 정신상태』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먼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유명인사들이 용공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황당무계한 내용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 수준의 독자라면 그 제목만을 보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고 했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일반 독자로서는 위와 같은 제목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건 제1기사의 다른 작은 제목과 본문을 더 읽음으로써 그와 같은 제목을 단 피고 정 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나아가 본문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련된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정 이 위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 것은,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주장은 별지 제1 기재와 같이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에 터잡은 것이라고 본문에서 조목조목 논평한 결론, 즉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는 셈이 되어 그러한 논리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극히 부당하다는 같은 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비유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기사 전체의 인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제목만으로 독자들이 마치 원고가 위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단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상적 문제 부분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위 통일 캠페인 광고 중에 나온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대사나 기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통일이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며, 통일원이 많은 돈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논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논평은 요컨대 위 광고 중에 나온 대

사나 가사가 통일이나 반공교육에 관하여 그 동안 북한이나 친북지식인들이 주장해 온 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되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이른바 '용공성이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 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작은 제목에서 '원고가 위 사람들의 광고 중의 대사나 가사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용 관행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바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적시한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녀사냥 부분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게재한 이 부분 기사는 그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 정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한 사실 및 위 월간조선 기사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논리를 비약하여 한 비판이라는 나름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제2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비유적, 은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위 기사 부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의견 또는 논평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관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면, 사디즘(sadism)이라는 말은 이성을 학대함으

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는 변태 성욕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져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기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기사의 체제와 내용에 나타난 피고 정. 의 주장과 논리의 전개 방법 및 작은 제목으로 사용된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과 합체되어 이를 읽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사가 과거의 친일행각을 은폐하고자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사에 소속된 원고가 회사측의 요청,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의도에 영합하여 앞에서 본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도나 경위로 위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 게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기사의 작성 및 게재에 이르게 된 경위,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내용과 그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2.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조 양 희

판사 이 재 석

〈별 지〉

통일원의 홍보물이 연방제 연상케 한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독자는 우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리 지겨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흑백논리식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자 5분 동안 아래에 시험문제를 풀어보자.

* 지문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①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나라꽃은 무엇이 될까요? 공휴일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② “애틀랜타에서 북한 선수를 봤어요. 어렸을 땐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참 반갑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요?”

“(중략)알고 보면 이렇게 가까운 거린데 마음의 거리는 북극보다 멀어요. 우리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야겠어요.”

③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하나가 되죠.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나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아요.”

1. 통일이 되면 수도는 어디가 될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평양 ④ 개성

2. 밑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① 북한 사람은 빨이 달리고 새빨간 사람이라는 식의 반공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남북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열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반공교육은 더욱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야 한다.

3. 위의 지문 전체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남한의 통일정책인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이다.

②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이적표현물이다.

1번 문제에 독자는 어떻게 답했는가.

어떤 독자는 통일 이후 수도는 당연히 서울이어야 한다고 답했을 것이다(실제로 세계일보가 95년 2월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그렇게 답했다). 또 어떤 독자는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있는 개성이 적합하다고 답했을 것이다(실제로 대통령자문 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94년 5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 수도의 가장 강력한 후보지는 개성을 꼽았다). 소수이긴 하지만 평양을 선택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새 수도의 후보지로 평양을 꼽은 사람은 5.7%였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에 독자는 어떻게 답했는가.

아마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독자라면 모두 ①번을 선택했을 것이다. 물론 ②번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원적 견해의 상호 존중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판단의 준거가 시대적 조류와 상식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번 문제의 답은 반드시 ①번이어야 하며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답은 반드시 ②번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나아가 자기와 다른 답을 선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까지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독자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 『문제제기/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기사를 쓴 이 기자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고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단정했다. 사실 위의 지문은 통일원이 97년 2월초부터 5월 말까지 MBC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광고한 통일 캠페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지문①은 라디오 광고 「통일이 되면」 중 여성 나레이터의 대사였으며 지문 ②는 텔레비전 광고 「우리는 하나」 중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였다.

이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용공·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셈이 된다. 권오기 통일원장관이 용공·이적표현물 제작의 총지휘자이고 농구선수 우지원 씨, 미스코리아 한성주 씨, 가수 이선희 씨가 용공·이적표현물 유포자라고

주장하는 월간조선 이 기자, 그의 정신상태를 검증해 보자.

기자의 편견이 비약과 궤변의 뿌리

이 기자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을 용공·이적표현물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한 근거는 세 가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뀔 수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삽입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게 아니냐.”(96쪽)

② “‘어렸을 땐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는 대목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사상적으로)문제가 있다.”(98쪽)

③ “‘마음을 열자’고 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들에게만 적과 아군의 개념이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다.”(100쪽)

이 기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그가 제시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의 주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궤변에 불과하다. 즉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에 바탕한 주관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주장부터 보자.

독자는 우선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자가 문제삼은 광고의 원래 내용은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나라꽃은 무엇이 될까요? 공휴일은 어떻게 바뀔까요?”라고 의견을 묻는 의문형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의문부호가 세 개나 등장하는 이 문장을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단정적인 서술형 문장으로 아주 손쉽게 둔갑시켜 버렸다. 그는 한술 더 떠 통일원이 마치 북한 중심으로 수도와 나라꽃과 공휴일을 바꾸자고 한 것처럼 몰아갔다. 그가 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증거다.

“수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북이 중심이 된 통일의 경우만 수도 서울이 평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무궁화가 통일 후에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연장하면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통일 이후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해방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의 주장대로 ‘친일파들에 의해 미제 앞잡이와 손잡고 세운 괴뢰정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통일원은 수도와 나라꽃과 공휴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모든 것이 북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다. 특히 통일원은 월간조선 97년 7월호에 게재된

답변서를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광고기법”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스스로 고백한 바 처럼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했다. 결국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 주관적인 해석을 시도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상상력은 시인이나 소설가의 영역이다. 물론 기자라고 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상상력의 발휘가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을 통해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기사를 쓰기 전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취재원의 답변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또 답변내용을 부정확하게 기록할지도 모른다. 또는 발언의 전체적 배경과 맥락을 모를 수도 있다. 기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경우도 있다.”(브라이언 S. 브룩스 공저,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취재와 보도〉 40쪽)

이 기자는 논리의 비약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그는 기사 첫머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쓴 바 있다. 물론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8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이 자민련 의원은 “대한민국의 통일원은 국민의 혈세인 3억8천만원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라고 발언했다. 7월 17일 통일대비포럼도 조선일보 5면에 “통일원 해체하고 통일원장관 물러나라”는 5단 광고를 실었다. 다음날인 7월 18일에는 민족안보구국통일연합회가 기관지 신문고를 통해 통일원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기자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일이다(참고로 월간조선 7월호는 6월 20일경 발행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이 기자 자신이었던 것이다.

“반공에만 매달리는 것은 공허하고 시대착오적”

더욱이 그는 6월 28일 통일대비포럼이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박 총장 후원회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문제의 기사를 발제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오 씨, 이 씨, 이 의원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찬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사인 김 북한문제연구소장의 증언을 들어보자.

“난 이 기사를 그날 처음 봤는데 젊은이가 좀 보수적이더군. 그 사람이 월간조선 기사를 발표했어요,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해서 무슨 성토대회처럼 됐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되다고. 그런 걸 모아서 광고를 내기로 하고

그 일은 의장단에 맡기자고 했어요.”(길 97년 9월호 84쪽)

따라서 이 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쓰기보다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거나 “내가 논란을 조장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

이 기자가 들이댄 잣대는 반공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땐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더라구요”라는 농구선수 우지원 씨의 말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 모양이다. 이 기자는 우선수의 발언을 “납득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98쪽)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통일원 통일교육원 홍보부의 정 과장에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정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빨갱이라고 묘사하고 빨 달린 도깨비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훗날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고는 놀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면 통일에 장애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기자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시각이야말로 ‘친북 지식인들의 논리’라고 규정해 버렸다. 그는 21세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수 논객들조차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일까.

“한국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반공주의는 그 타당성을 아직 잃고 있지는 않으나 보수주의가 반공을 국제적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던 냉전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이제 반공 이상의 더 높고 깊은 보수주의 본연의 가치관과 원리를 되찾아야 할 때에 처해 있다. 만약에 보수주의가 종전대로 반공에만 매달려 있으면 보수주의는 급속도로 공허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박근 저,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머리말)

이 기자는 통일 캠페인 내용 중에서 “마음을 열자”는 대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자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의 개념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대목에서조차 용공의 혐의를 느낀다는 이 기자. 그렇다면 그는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참으로 딱한 일이다. 통일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마음을 열자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나 체제를 용인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북한 동포를 이끌어 나가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가 통일원만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도리어 주공격의 대상은 이 외국어 대 교수였다. 그것은 기사의 분량에서도 그대로 증명된다. 7월호 기사의 분량은 총 13쪽. 그런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페인』이란 기사의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교수와 관련된 분량이 무려 8쪽에 이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조선일보도 사상으로 수상?

이 기자는 통일원 실무자와 광고회사 직원에게 취재망을 이어가던 중에 이 교수의 저서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아마도 이교수와 그의 저서가 ‘용공 광고’의 진원지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는 기사의 후반부에서 그가 이 책의 ‘용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일원 ‘용공 광고’의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 책은 수많은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통일원의 답변을 들어보자.

“이 책이 ‘통일 홍보 캠페인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무 차원에서 공익광고 문안 작성자에게 제공된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과연 어떤 책인가. 이 책은 2년 전인 95년 10월 중고생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천재교육에 의해 발간됐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도리어 조선일보(95년 11월 24일자)와 민주평통(95년 12월 7일자) 등 보수적인 언론매체가 신간안내를 통해 좋은 책으로 소개했을 정도다. 표지에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①’라는 부제가 적혀있는 이 책은 「이 책을 펼친 어른들에게」 「이 책을 읽을 어린이에게」 등 2개의 머릿말과 의문형으로 된 27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제목들은 다시 어린이들이 쓴 글 2편. 그 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교수가 직접 집필한 부분). 북한 이야기(편집부에서 내외통신, 조선일보 등을 이용해 흥미있게 작성한 부분) 등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다. 목차에 소개된 소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수도는 어디에』, 『금강산에 수학여행 갈 수 있을까』, 『통일되면 북한에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할까』 ….

이 기자가 제일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은 통일원 캠페인 광고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용한 바 있는 바로 이 부분, 그러나 이교수는 이 책 속에서 통일 이후의 수도 선정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서울은 수도로 그냥두는 것이고 옮기더라도 지역상 한반도의 중심이자 한강을 끼고 있는 용수량이 풍부한 한반도의 허리부분이 될 것”(28-29쪽)이라고 밝혔다. 공휴일과 관련해서도 “통일이 되면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명절에서 빠질 것”(83쪽)이라고 기술했다. 애초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이 기자가 이 교수가 직접 쓴 글 중에서 용공협외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두 가지, 다음은 첫 번째 부분이다.

① “우리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일과정을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통일 뒤의 사회가 크게 바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체제가 되든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자는 특히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을 “남한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닌 통일”(105쪽)로 확대 해석하고 연방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투로 추궁했다. 그러나 한번 따져 보자. 남한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닌 통일이 왜 연방제인가. ‘북한식’ 통일이야말로 바로 연방제 아닌가, 또한 이 책 어디에도 연방제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교수는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체제를 강조했다.

사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94년 광복절 경축사)라고 먼저 밝힌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더욱이 김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조선일보는 칭송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94년 8월 16일자 사설에서 “남북관계를 타결하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도 종래와는 다른 시대적 소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이 기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일보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내가 하면 알 권리, 남이 하면 이적행위?

다음은 이 기자가 시비를 건 두 번째 부분이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체제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거든요….”

물론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자본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현실을 서술하는 이 교수의 논리에서 도입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교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

주의 체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시치미를 뚝 떼 채 이교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과연 이기자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이 기자는 천재교육 편집부가 따로 묶어 각 항목 뒤에 배치한 「북한 이야기」의 일부 내용까지 비판했다. 이 책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이 비판 없이 그대로 소개돼 있으며, 북한의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다고 소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상식을 소개한 것조차 용공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관인 것은 이 책이 발간될 무렵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연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95년 5월 23일자 『얼마나 아십니까 - 북한상식』 62편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일부와 「애국가」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소개하면 이적 행위이고 조선일보가 소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란 말인가.

트집잡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 기자는 <나는야, 통일 1세대>가 북한의 나쁜 점은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공짜로 병도 고쳐주고 생필품과 집도 공짜로 나눠주는 나라로 묘사하는 등 객관성이란 미명 아래 북한이 살만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 책의 곳곳에서 북한의 문제점과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에서의 기차의 상습적인 연착과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의 활개”(66쪽), “양력설에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고 김정일의 새해 연설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일”(84쪽), “청바지가 한달 월급의 5배나 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90쪽),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96쪽), “텔레비전의 절대적 부족”(102쪽), “김정일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 귀순하든지 아니면 동독의 호네커처럼 망명하게 될 것”(155쪽), “의료시설과 약의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156쪽) 등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의도적인 인용과 생략으로 빚어낸 왜곡보도

이 기자는 97년 9월호에 『추적/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참고도서에 글을 쓴 두 어린

이가 말하는 왜곡·변형의 사례 -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기사를 읽고 다시 이 교수를 공격했다. 그는 이번에는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54건의 어린이 원고 중 16건의 원고를 입수해 면밀히 대조한 결과 두 어린이의 원문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 기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 어린이의 원문 중에서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못된 마음을 알려 주어야 하겠다. 그러면 북한 국가를 애국가로 쓰자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 …”라는 대목이 삭제됐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전문가의 답변에서 “통일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바뀔 것이 많겠네요. 나라 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뿐만 아니라 …”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② 한 어린이의 원문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준비에 자유란 언어도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대목이 “공산주의 국가에선 항상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변형됐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 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좋은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라고 상반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책의 편집 책임자였던 천재교육의 김 씨는 “어린이 글의 첨삭은 편집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1쪽을 넘을 경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집기술상 한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만약 분량이 넘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 그 원고의 맨 뒤에 있던 세 문장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1쪽이 넘지 않는 다른 원고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편집자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수는 어린이 글의 편집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기자는 이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저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따졌다. 기사에서 “자신의 글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의 글은 삭제한 채”(93쪽)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논리 전개과정에서 이 기자는 큰 실수를 범했다.

먼저 이 기자의 주장 ①을 보자. 그는 이 교수가 “애국가는 그대로 쓰고”라는 한 어린이의 글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글이 실려 있는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라는 항목에는 다른 어린이의 글이 또 하나 실려 있다(각 항목에는 두 어린이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교수는 이 두 개의 글을 읽은 뒤 전문가의 답변을 썼다). 이 어린

이의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덧붙여져 있다. “애국가는 요즘 유행하는 서태지나 김건모의 랩송으로? 아니면 북한 노래로? 나는 애국가가 은은한 느낌을 주는 가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교수의 답변은 바로 이 글을 읽은 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자가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결국 이기자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꾀변만 늘어놓은 셈이다.

이 기자의 주장 ②도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교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한 글에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마치 이교수가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교수의 글에는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등의 대목이 있다. 이 기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해 버린 것이다.

원고 내용이 침삭·변형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 기자는 총 54편에 이르는 어린이 글 중에서 2편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의도적인 침삭은 없었다는 반증이다. 만약 저자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침삭하려 했다면 다른 원고에서도 삭제·변형 사례가 당연히 발견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원고를 쓴 한 어린이는 이책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은 침삭 부분이 글 전체의 맥락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할 것이 있다. 이 기자는 명백하게 출판사의 편집권을 침해했다. 한 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 월간조선은 항상 독자투고나 청탁원고를 줄이거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싣는가. 편집기술상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제3자가 나서 월간조선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삭제·변형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한다면 어쩔 것인가. 92년 대선에서 국민당이 편파·왜곡보도를 규탄하며 불매운동을 벌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즉각 응전했던 조선일보가 아닌가.

이 기자에게 보내는 시험문제

월간조선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 기자의 기사에 대한 이 교수의 반론 보도문을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실어야 했다. 또한 이 기자와 극우단체의 선동에 놀아난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결국 이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 기자는 아직 젊다. 그런 그가 시대착오적인 50년대식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

혀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매우 선정적인 제목의 두 기사를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파문의 배경에 대한 이 교수의 진단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교수는 “치열한 보도경쟁에서 시선을 끌어 보려는 보수언론의 저속한 상업주의와 옛 영화를 꿈꾸는 극우인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이 기자에게 시험문제를 보낸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으면 이기자는 여전히 연방제를 연상하는가. 남북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야 한다고 믿는가.

“코리아 팀의 이분희 누나가 나는 참 좋았다. 경기할 때 표정도 그렇고, 얼굴도 복실복실한 것이 꼭 우리 누나 같았다. 결승전 때 덩야핑이란 두꺼비같이 생긴 중국 선수에게 지는 것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분희 누나는 울지 않았다. 그런 누나를 보면서, 북한은 이분희 누나 같이 생긴 여자가 사는 곳이구나 생각했다.”(〈우리교육〉 91년 6월호 『아이들 소리』 중에서)

2심 판결문

사 건 : 2000나1882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월간 말
대표이사 이 명 순
2. 정
피고 1, 2의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의 10 4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갑 수

변 론 종 결 : 2001. 3. 29.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기사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

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일반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 의미에서 가학성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 정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의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학자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면 이는 그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정 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법성에 관한 판단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익성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하여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월간조선 1997년 7월호에 『문제제기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 캠페인: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 조선 1997년 9월호에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재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통일에 관하여 쓴 글에 대해 이 교수가 해설을 단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의 이적성을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이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고가 작성한 위 기사들이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도 이 교수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 글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적성을 문제삼은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이 사건 제2기사에서의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 라고 한 표현은 원고가 작성한 월간조선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이 교수를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았다는 것이 그 전제 사실이고 피고 정은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과연 피고 정 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판이 원래의 글의 의미를 왜곡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나오는 이 교수의 위 부분에 해당하는 글은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라는 의문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싫다고 하는 내용과, 중립국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2편의 초등학교생의 글을 읽고 북한과 남한을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달았다(위 책 22-23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체제는 지난 역사에서 보면 큰 단점이 드러났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본주의 나라들과 힘을 겨루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지금 거의 무너져
담니다. 몇 년 전부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바뀌었지
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직장과 집을 정부가 다 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
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주의 체제
를 공산주의 체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
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도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는 것은 처음엔 어려움이 좀 있
을지 몰라도 역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고는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한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 하의 글에서 위 부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후 비판하고 있
다(위 책 95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능력없는 사람까지 같이
먹여 살리자는 거예요. 다같이 잘 사는 뜻이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매우 착하
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지요〉(22쪽) …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어린이들에게
보일 소지가 있다.”

원고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말한 부분만을 끊어서 인용
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가 매우 좋은 제도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러한 문제제기로 발간되었을 때 조선일보가 스스로 신간안내를 통해 좋은
책으로 소개하였고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던 이 교수의 위 책이 그 이적
성이 사회문제화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1. 2. 23. 선고 97고단10828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서 위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
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교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이 작성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정 의 위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의견의

표명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표현이 사상검증의 와중에서 나온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따로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정 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7.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1. 5. 23.자 판결 (2000가합2110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5월 23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무료혈액투

석센터는 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② 심지어는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삐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의 돈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피어 환자를 유치하며, ③ 이러한 환자유치를 통하여 환자가 많아지자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일반 독자가 위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제목의 크기와 내용,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투석센터도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②, ③부분의 사실적시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환자들에게 식사 및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며,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등 위법한 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들로 이루어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의견표명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데, 피고 주장의 사유들은 위 ②, ③부분의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정정보도 게재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자신이 발행하는 의협신보 2000년 3월 6일자 제11면에 『탈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이라는 제하로 원고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자 유치행위 등 불법을 일삼는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3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98)을 하여 같은 해 3월 27일자 의협신보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바 있고, 피고가 3월 27일자에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자 또다시 중재신청(2000서울중재112)을 하여 의협신보 4월 13일자에 새로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21104 손해배상(기)

원 고 :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층정타워 6층

대표자 이사장 김 상 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75

대표자 이사 김 두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현 희

변론종결 : 2001. 4.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2001.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송달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 <의협신보> 제1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문 부분은 고딕체 20호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금 2천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 증인 오윤수(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제9, 13호증, 증인 오 의 일부 증언

가. 원고 개설 의원의 무료혈액투석

(1) 원고는 1991. 9. 6. 장기이식사업필요자의 실태조사사업, 헌혈사업에 대한 계도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다가,

만성신부전환자는 1주일에 2~3회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1회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1999. 3.경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정관에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에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환자의 재산상태와 투석연수 등을 고려한 환자의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는 본인부담금(혈액투석의 경우 치료비용의 20%는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을 받지 아니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원고가 펼치는 만성신부전환자의 투석비 마련을 위한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위 치료비 및 사업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혈액투석비용의 보험자부담금(치료비용의 8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나.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1) 피고는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의학 발전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 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일주일에 2회씩 의협신보를 발행하여 오고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무료혈액투석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인이나 해고근로자, 실직자,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사례가 있음을 파악한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1998. 3.경에 주무부서에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주무부서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내원하는 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한 바 있다.

(3) 일부 언론은 1999. 9.경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준다는 복지법인 부설 병원이 전국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 병원들은 노인 환자들을 동원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지역의료보험으로부터 보험자부담금으로 진료비의 70%를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지역의료보험재정을 잠먹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와 같이 병, 의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고 환자를 유치

한 경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4) 또한 피고 협회에는 내과 의사가 아닌 흉부외과 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인공투석을 하는 사례 등 탈법사례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인공신장실을 갖춘 병·의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요구받는 사례까지 생기는 등 기존의 의료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 그러던 차에 피고는 2000. 3. 6. 발행의 의협신보 제11면에 별지 제1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6) 의협신보는 발행부수가 약 40,000부 정도인데, 회원인 의사들에게 약 35,000부 발송되고, 나머지는 대학병원 등에 배포된다.

다.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원고는 위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반론보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3. 27.자 의협신보에 원고의 반론보도문(별지 제2기사)을 게재하였으나 바로 그 기사 옆에 별지 제3기사를 게재하였다.

(2) 원고는 다시 위 27.자 기사(별지 제3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다시 같은 해 4. 13.자에 별지 4기사와 같은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② 심지어는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빼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의 돈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피어 환자를 유치하며, ③

“이러한 환자유치를 통하여 환자가 많아지자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일반 독자가 위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제목의 크기와 내용,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도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②, ③부분의 사실적시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과다한 환자유치로 인한 부실진료 또는 과잉진료의 위험성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진실성

이 사건 기사 중 ①부분은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는 환자유치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의견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개설의 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일반 병·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환자유치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며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등은 법상 금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불법으로 논평한 위 ①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이 사건 기사의 ②, ③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상당성

피고는, 원고 개설의 무료혈액투석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환자들에게 식사 및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며,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등 위법한 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험제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가인 의사들로 이루어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견표명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위 ②, ③부분의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그간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자체 접수된 회원들의 제보 및 자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상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②, ③부분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그밖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기사가 원고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및 내용, 특히 오로지 원고만이 무료혈액투석센터의 개설주체로 명시적으로 거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원고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가. 손해배상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②, ③부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기사의 게재경위와 내용,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기사가 주는 인상의 강도, 피고가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의협신보의 발행부수와 그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두차례(별지 제2, 4기사) 게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이미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별지 제2기사)를 게재하면서 같은 면에 다시 별지 제3 기사를 게재하여 별지 제4 기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경과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반론보도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등

원고는 나아가, 위와 같은 위자료의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이를 불이행 경우의 간접강제를 구하나, 이 사건 기사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명예훼손 기사 게재일인 2000.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5.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5. 23.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제1 기사〉

脫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

본인 부담금 안받고 환자 유치 발 벗고 나서

의료체계 치명타 ... 임상병리사가 과잉진료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까지 잇따라 개설

국민건강 차원 불법기관 대대적 단속 시급

최근 몇년새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탈법적 의료행위에 이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존 의료체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투석센터는 서울을 비롯 부산·대전·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도 이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의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인공신장실을 도입, 혈액투석을 시행해 온 A원장이 인근에 무료투석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개업 10년만에 문을 닫았다고 주변 동료가 本紙에 알려왔다.

무료투석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태로 의원을 개설한 다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환자 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G의원과 H의원의 실제 개설자는 '임상병리사'로 알려지면서 과잉진료까지 일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회원들의 전화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빠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꾀고 있다는 것이다.

혈액투석환자 중 위급하고 중환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도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도 환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불법 투석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보험자단체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현재 서울을 비롯, 대전 5곳 논산 2곳 등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부산·대구·강릉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2 기사〉 반론보도문

타의 모범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에서는 영세한 환자들에게 무료투석치료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도 부담하는 조혈제 등 모든 약값도 받지 않고 식사도 무료 제공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본부에서는 무료로 투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99. 3. 10)을 얻었으며,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 환자들을 선별하고 있다.

한편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작년 12월 서울시 각 구청마다 영세한 환자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도와주고 있어서 다른 병원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한파로 인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그 횟수를 줄이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문을 연 '사랑의 인공신장실'은 내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갖추 다른 병원과 차별화를 시도, 육체적인 진료와 아울러 정신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 본부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부산, 대구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제3 기사〉

무료 투석 적극 대처를...

장기기증본부 부산·대구에도 무료 인공신장실 개설키로

치료비·약값 안받고 식사까지 제공 의료계 타격 불보듯

서울과 인천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부산과 대구에 똑같은 형태의 무료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방침이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투석치료비는 물론 조혈제 등 약값도 받지 않고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인공신장실을 전국에 걸쳐 개설할 경우 기존 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 한 관계자는 “장기기증본부측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수가 70~80명인 점을 감안할 때 관리의사 한사람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는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신장질환 뿐 아니라 내과계의 여러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들어 일부 회원이나 일반인이 무료혈액투석센터를 개설한 다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심한 경우 환자유치 행위까지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전국회원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법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면밀한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4 기사〉 반론보도문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본지 3월 27일자 10면 『무료투석 적극 대처를...』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운동본부는 91년 설립 이후 장기기증 운동을 벌여 왔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나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정관을 변경,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서울과 인천에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영세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혈액투석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별 지〉 정정보도문

제 목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인공신장실 운영 적법 확인돼

본 문 : 사단법인 한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보>는 2000년 3월 6일자 제11면에서 『脫法 무료혈액투석센터 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무료투석센터가 탈법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환자 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졌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 이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왔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평생토록 혈액투석(인공 신장에 강제로 피를 걸러주어야 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 월 50~8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1999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정관을 변경하여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

업'을 사업에 추가하고(제4조 제7호), 또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제5조)'고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9. 3.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충정타워 지하 1층과 인천 중구 전동 소재에 각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 혈액투석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탈법적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위 '빠끼'를 두거나 또는 그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거나 그에게 소개의 대가로 현금으로 준 사실도 전혀 없으며 그외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의사협회는 <의협신보>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년 월 일 본 협회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금 1억원을 배상하고 본 정정보도문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정정보도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1. 5. 31.자 판결 (2000나1108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5월 31일 유명 방송인 백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한 스포츠투데이 기사를 상대로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신문에 보도하고 또한 그 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는 반면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적 진술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원진술과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또한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되나 사소한 효과밖에 없는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284~295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0나1108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윤 영, 오 양 호, 박 성 규

피고, 항소인 : 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5층 편집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 상 현

변 론 종 결 : 2001. 4. 12.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기자 및 앵커우먼(anchorwoman)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프리랜서(자유 계약직)로 방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연예, 스포츠 기사를 주로 다루는 일간지 <스포츠 투데이> 신문을 발행하는 넥스트미디어신문 주식회사(변경전 회사명; 스포츠투데이신문 주식회사, 이하 스포츠투데이라 한다)의 연예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1) 피고는 1999. 7. 16.자 <스포츠 투데이> 신문 제1판의 1면에 광고를 제외한 거의 전지면(약 2/3지면)에 걸쳐, 우측에는 원고의 얼굴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좌측에는 큰 글씨로 『사이버 테러, 모함』, 중간 글씨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제목을,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인터넷 신문 보도”라고 기재하고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기제가 있는 배 의 홈페이지의 사진 영상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 ...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고 부제목을 각 붙이고 그 아래에 별지 ‘제1판(초판) 신문’ 기재 기사(이하 초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는 1999. 7.

15. 오후와 7. 16. 아침 전국으로 발행, 배포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초판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의 얼굴 사진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 홈페이지의 영상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지면 할당량을 1/5 정도 줄인 후 원고의 사진 좌측에 큰 글씨로 『모함』, 중간글씨로 『이혼배경관련 사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 난무 … ‘용서 못해’』라는 제목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 … 본보와 전화통화』라는 부제목을 붙이고 기사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별지 ‘제6판(수정판) 신문 기사’ 기재 기사를 다시 작성하였고(밑줄친 부분은 초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수정한 부분임, 이하 수정판 기사라 한다), 이는 1999. 7. 16. 아침에 전국으로 발행, 배포되었다(이하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기사, 그에 대한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피고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원고가 위 신문 보도 전에 수 차례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보도 시점까지 논의했으며 “스포츠투데이 16일자 초판 신문이 나간 후 15일 오후 6시께 MBC 근처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난 백씨는 신문을 펼쳐놓고 제목과 기사내용 중에 몇몇 어휘 수정을 요구했다. 가능하면 요구대로 고쳐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판을 기대하겠다고만 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자리에서 백씨는 “사진은 예쁜 것을 써주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일문일답 형식보다는 기자의 멘트로 ‘잘 나가는 여자를 못 봐 주는 사회풍토에 대해 따끔한 얘기를 덧붙여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특히 헤어지기 전에 “행여 나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묻자 백씨는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말까지 하며 위 기사작성에 적극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999. 7. 22자 스포츠투데이에 그와 같은 기사가 『MC 본보 연예기자 소송』, 『5억 내라』는 제목 하에 게재되었고(이하 이 사건 소송 기사라 한다), 같은 날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SBS 인터뷰라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1) 원고가 1999. 1. 27. 위자료나 양육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자 호사가들 사이에서 그 이혼배경을 둘러싸고 구구한 소문이 나돌다가 1999. 7. 10. ‘미주 통일 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라 자칭하는 배 이 국내 PC 통신업체와 ‘미주 통일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ty.co.kr>)에 『여성 앵커를 울린 남자는…』, 『모 여성 앵커 이혼 이유가…?』 등의 제목으로 “근래 이혼한 유명 여성 앵커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상대는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주로 국내 PC 통신업체를 통

하여 사용자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여성 앵커가 원고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2) 위 기사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 윤색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시키던 위 배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국내 PC 통신업체와 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내용도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원고는 그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에 오히려 소문을 확산시켜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형사고소를 망설이고 있었다(그 후 이 사건 보도를 계기로 한 원고의 고소로 개시된 배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가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소문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0.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1999. 3.경 원고가 소속 방송사에 사표를 낼 무렵부터 주로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소문이 PC 통신에 게시되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1999. 7.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위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 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에게 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내용을 기사로 만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1999. 7. 15. 10: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동안의 전화 통화내용을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뷰도 없이 무슨 기사를 쓰냐”,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고 장래에 아이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화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소문을 기사로 쓰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초판 기사를 게재하였다.

5) 원고가 같은 날 14:00~15:00경 초판 신문이 발행,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1999. 7. 16. 아침에 배포될 신문에는 위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원고를 찾아온 피고를 만나 MBC 방송국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판 기사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발행된 신문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날 아침판에서라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분량을 줄이고 다소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판 기사를 게재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나온 직후인 1999. 7. 16. 배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1999. 7.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이 사건 소송

기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SBS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는 원고 개인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공개한 것은 일응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는 앞 부분에 적시된 원고에 관한 소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소문에 대한 원고의 생각과 해명,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이 기사는 위 소문에 관하여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사정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보도일 뿐 원고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백에 대한 모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혼배경과 관련한 사이버 테러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헛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원고의 이혼과 관련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보도를 승낙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간 신문의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인터뷰의 경우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신이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임을 밝히면서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혼사유 및 배경과 관련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뉴스 앵커 및 기자로서 다년간의 근무경험이 있던 원고가 전화취재에 응하여 충실하게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전화내용을 기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보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한다.

인격권은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그 주체가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따라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라도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피고의 전화에 응대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공의 이해와의 관련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공인으로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오랜 동안의 방송활동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과 같은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공인이라고 하여 항상 그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도로 인하여 공중이 얻게 되는 정보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적인 영역도 유형화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 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보도의 내용이 원고의 이혼사유 및

그 배경에 관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고는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초판 기사와 수정판 기사 중 배의 글 보도 부분과 이 사건 소송 기사 및 SBS 인터뷰 부분)

1) 배의 글 보도 부분

(가) 보도의 내용

이 사건 초판 신문 기사 중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제목이 붙은 배부전의 홈페이지 사진을 싣고, 기사의 본문에서 “앵커우먼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 겸 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기재한 부분과, 배의 홈페이지 사진을 생략한 수정판 신문 기사 중 본문에서 “앵커우먼에서 지금은 MBC 「백의」를 진행하며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 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소문의 주인공을 ‘백’이라고

지목. 연일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전파와 명예훼손

먼저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이 원진술과 독립한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또한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전파도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파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언론매체에 의한 전파는 오히려 원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정부기관이나 공인된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오류가 적다고 믿고 PC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보다 쉽게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독자층을 두루 갖추어 판매망이 전국에 이르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보통의 경우 개인이 홈페이지나 PC 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머지 않아 이용자들의 관심은 식어 버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사라져버려 공인되지 않은 ‘소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생명을 다한다. 그러나 만일 그 ‘소문’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그것도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가진 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 퍼진다면, 그 ‘소문’의 피해는 PC 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되나 사소한 효과밖에 없는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명예훼손책임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배 이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올린 글의 내용은 원고가 혼인 생활 중 포태한 아이가 남편 이외의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위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인에 대한 소문은 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그 진위 여

부를 떠나 공인의 부정행위나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므로 일반인들이 그 사람의 사회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도 합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배 이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게재한 글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홈페이지와 PC 통신에 오른 배 의 글을 보도함에 있어 위 '미주 통일 신문사'가 실제로 있는지, 배 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글을 다루는지, 과연 그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배 의 글을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스스로도 위 배부전의 글이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공익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송 기사, SBS 인터뷰와 명예훼손

(가) 내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투데이의 취재에 응하여 원고가 위 보도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초판 기사가 나간 후에도 피고를 만나 기사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사진에 관하여는 만족한다는 말까지 해놓고도 마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원고와의 인터뷰 없이 보도를 한 것처럼 피고와 소속 신문사를 비난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999. 7. 22. 스포츠투데이에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 기사가 게재되기에 이르렀고, 같은 날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판단

사회적으로 유명한 여성 방송인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의 기사화에 동의하고서도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일체의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기사가 원고의 동의나 인터뷰 없이 보도한 것으로 비난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위법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기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원고의 허위주장에 맞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피고와 인터뷰를 하고 그 보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신문에 보도하고 또한 그 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피고의 확인 노력의 정도, 위 기사의 내용, 기사가 신문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보도 후 피고가 취한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는 1억원이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의 넥스트미디어신문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31.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제1판(초판) 신문〉

〈제목 부분〉

사이버 테러

모함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

인터넷 신문 보도(그림)

고통의 ‘白夜’ ... 본보에 최초 고백

〈기사내용〉

앵커우먼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 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발행 겸 편집인 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 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아'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백 이와의 일문일답이다.

-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

▲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리낄 이유는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사실이 아니라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맞선다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게 없다고 여겨졌다. 주변에서도 소송을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 조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 달리해 통신에 오른 글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직도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 우문이지만 이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썄,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으로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뒷 배경에는 꼭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섭섭하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제6판(수정판) 신문〉

〈제목 부분〉

모함

이혼 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

인터넷에 헛소문 난무 ... “용서 못해”

고통의 ‘白夜’ ... 본보와 전화통화

〈기사내용〉

앵커우먼에서 지금은 MBC 「백 의 」를 진행하며 토크쇼 MC로 변신한 백

이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BAE ’이란 통신 ID로 미주통일신문사 배 발행·편집인인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 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그녀의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소문의 주인공을 ‘백 ’이라고 지목. 연일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가 ‘어’로 와전되는 말로는 100% 진실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해온 그녀가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평소의 그녀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였던 백 과 15일 새벽 전화통화로 이뤄진 일문일답이다.

- PC 통신에 오른 글을 보았는가.

▲ 통신에 오른 글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바로 알았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내용 삭제함) 소문은 120% 조작된 것이다. 조금도 거리낄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도 통탄스럽다. 나 개인에 대한 얘기라면 참고 넘기겠지만 아이까지 연관시키는 것은 아이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의 장래

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그렇다면 허위조작에 대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맞대응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또 글을 올린 사람이 예전에도 떠도는 루머를 함부로 올렸던 장본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악용하고 있다.

-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물론 그렇다. 변호사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다.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 이 같은 소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 글썄, 아마도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것만큼의 대우는 받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는 여자의 배경에는 꼭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류가 너무나 안타깝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나이겠지만 이러한 사회풍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극이다. PC통신 게시판의 역기능이 극에 달한 지금 잘못된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남의 소중한 아이까지 연관시켜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상식과 건전한 이성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믿고 싶다. □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22.자 판결 (99가합568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1년 6월 22일 현직 검사

들인 원고 김 ○ 외 20인이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 이 ○, 정 ○, 김 ○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히고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이 1,151명이 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인 바, 이 사건 각 방송 당시인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사이의 검사의 현 인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위와 비슷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 위에서 본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보도 등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인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은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1999년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 ○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 변호사의 불법로비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현직 검사인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5683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2. 김

3. 최

4. 이

5. 김

6. 김

7. 허

8. 이

9. 정

10. 한

11. 정

12. 하

13. 이

14. 이

15. 강

16. 김

17. 전

18. 강

19. 김

20. 김

21. 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서

대전 중구 선화1동 381-171 대전문화방송(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진 선 미, 도 재 형, 이 석 태, 이 정 희

변론종결 : 2001. 5. 11.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4.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가. 최초로 방송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대전 변호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위 가항 방송 다음날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 번째 순서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

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나. 위 가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다. 위 나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 정정보도문을,

라. 위 다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4 정정보도문을,

마. 위 라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5 정정보도문을,

바. 위 마항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6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각 기간 안에 위 제2항 각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각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을 제11호증의 15와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피고들의 아래 각 방송 및 보도시,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심 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등 소속 검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시에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경력은 별지 '원고들의 경력'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MBC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MBC TV에서 매일 21:00경 방송되고,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이다)을 통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였고, 피고 서 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소속 기자로서 그 중 일부 내용을 취재, 보도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도내용

(1) 피고들은 1999. 1. 7. 21:00경 방영된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른바 '대전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세칭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피고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 구체적인 보도 내용의 표제를 일자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99. 1. 7.

고질적 비리였다

- 1999. 1. 8.

판검사도 사건 알선, 사건 무마 기도, 법조비리 본격 조사, 전관예우 고질병

- 1999. 1. 9.

이것이 비밀장부, 판·검사만 30명, 한번 떡값 천만원, 맡았다 하면 승소, 벌써 축소, 철저한 수사 약속

- 1999. 1. 10.
331명이 알선, 대검차장 직접 지휘, 변호사간 거래도, 소개비만 3천만원?
- 1999. 1. 11.
잠적 자수, 소개인은 379명, 우선 경위서 내라, 거명 인사 펴찍, MBC가 숨겼다고?,
왜곡보도 시인, 투명하게 수사하라
- 1999. 1. 12.
오늘 중 영장청구, 내일 평검사 소환, 탈세의혹 질다, 수시로 말 바꾸기, 국민에게 사과,
법조계 새 물결, 험난한 단독개업, 변호사는 철옹성?
- 1999. 1. 13.
 변호사 구속, 검사가 검사 조사, 대검 침통, 삭제파일 복구, 미리 입 맞췄다, 수뇌
부의 고민, 사실상 브로커
- 1999. 1. 14.
파렴치한 사건 수임, 본격 소환, 조사 제대로 하나?, 사건 주고받고, 심경 토로, 법조비리
규탄대회, 대규모 세무조사, 문제는 제도다
- 1999. 1. 15.
원하시는 대로, 디스켓을 찾아라, 검찰 이랬다, 저랬다, 향응협이 잡았다, 검사 조사 난항,
고무줄 수입료, 못말리는 불성실 변호, 수입제한 논란
- 1999. 1. 16.
소개비 받았다, 수사직원이 소개도..., 검사장급 소환, 처벌의지 있나?
- 1999. 1. 17.
조사는 했지만..., 대전검찰청 감사, -세무서 고소, 비리온상 성공보수, 법사위도
한통속, 법조계 5형제
- 1999. 1. 18.
판사들 곧 소환, 인사개혁 하겠다, 수입부터 투명하게
- 1999. 1. 19.
판검사 돈 받았다, 문제검사 안 봐 준다, 초호화 변호인단, 보수 자유화
- 1999. 1. 20.
법조비리 첫구속, 판검사 처벌 고심, 과감한 비리척결, 전문변호사 시대, 곱지 않은 국민
시선
- 1999. 1. 21.

검찰직원 2명 구속, 사무장 출입금지, 줄줄이 옷 벗는다, 법률회사가 해결사
 - 1999. 1. 22.

사법처리 마무리, 더 이상 구속 없다.
 - 1999. 1. 24.

실망 ... 분노, 판검사는 봐주나?
 - 1999. 1. 25.

문제검사 재소환, 변호사 명부 비치하자
 - 1999. 1. 26.

향응 받고 비리 수사, 여론에 귀 막고
 - 1999. 1. 27.

검찰총장 물러나라, 하극상 폭탄발언, 6명 구속 기소
 - 1999. 1. 28.

보직 박탈, 겉으로는 평온해도, 수사는 원칙대로, 전면개혁 촉구
 - 1999. 1. 29.

검찰 곧 대폭 인사, 출근 투쟁, 사표 제출 오늘 마감 - 수사발표 준비, 구속 기소
 - 1999. 1. 30.

비리조사처 신설, 출근 투쟁 계속
 - 1999. 1. 31.

검사 6~7명 사표, 은근슬쩍 넘어가나?, 알맹이 있나?, 판검사 2등 신랑감
 - 1999. 2. 1.

판검사 30명 조치, 드러난 떡값 수수, 판사들은 어찌되나, 눈물 흘린 총장, 옷 벗으면 변호사, 수사발표 반박, 인사로 조직 안정, 개혁안 내일 발표, 미흡하다, 국민의 검찰로 서길
 - 1999. 2. 2.

터놓고 얘기합시다, 집단행동 안 돼, 전관예우 없앤다, 누구 말이 맞나?, 전별금 없어지려나?, 변호사 너무 멀다
 - 1999. 2. 3.

심 고검장 면직, 검찰파동 일단 진정, 검찰중립엔 공감대, 총장 거취는..., 이번에 판사 반발, 검찰의 언론관, 개혁부터 하세요, 수임료가 으뜸 불만
 - 1999. 2. 4.

정상 출근, 법원도 술렁, 한숨 돌렸네, 고시촌에도 파장

- 1999. 2. 5.

정치검사 때문이다, 부인의 항변

- 1999. 2. 7.

연고주의 없앤다, 순수한 전별금 있나?, 닥터Q

(2)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9. 1. 8. 별지 '제1방송' (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2방송' (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9. 별지 '제3방송' (이하 이 사건 제3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4방송' (이하 이 사건 제4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1. 별지 '제5방송' (이하 이 사건 제5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3. 별지 '제6방송' (이하 이 사건 제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4. 별지 '제7방송' (이하 이 사건 제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5. 별지 '제8방송' (이하 이 사건 제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7. 별지 '제9방송' (이하 이 사건 제9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8. 별지 '제10방송' (이하 이 사건 제10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9. 별지 '제11방송' (이하 이 사건 제11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24. 별지 '제12방송' (이하 이 사건 제12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31. 별지 '제13방송' (이하 이 사건 제13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2. 3. 별지 '제14방송' (이하 이 사건 제14방송이라 한다), 별지 '제15방송' (이하 이 사건 제15방송이라고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2. 4. 별지 '제16방송' (이하 이 사건 제16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9. 1. 17. 별지 '제17방송' (이하 이 사건 제17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박재동의 TV만평'이라는 기사를, 1999. 2. 7. 별지 '제18방송' (이하 이 사건 제18방송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다.

(3) 피고 서 은 그 중 이 사건 제1, 4, 11, 12방송의 각 해당 내용을 기자로서 취재, 보도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도경위

피고 서 은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던 김 으로부터 이 변호사의 수입장부(컴퓨터 파일을 인쇄 또는 복사한 것임)를 넘겨받았는데, 그 당시 위 김 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입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다.

소외 고 기자는 위 김 의 사촌 형인 소외 복 등을 통해서 위 수입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소의 박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을 보도하였다.

한편, 피고 서 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위하여 이 변호사 및 대전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다.

라. 수임장부의 내용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 변호사의 수임장부는 피고들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632매와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김 의 집에서 압수한 122매 등 총 754매(필사 메모지 1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용’과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문건은 100매이고, ‘소개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제사건현황표와 민사사건목록이 653매이다.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총 379명, 사건은 총 1,137건이고, 그 중 ‘비용’ 항목이 기재된 인원은 122명, 사건은 279건이며, ‘비용’ 항목의 총 합계는 1억 6,630만원이다.

‘소개인’ 항목이 기재된 379명과 ‘비용’ 항목까지 기재된 122명의 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검사장	검사	판사	검찰 일반직	법원 일반직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일반인
소 개 인 항목기재	5명	23명	6명	71명	13명	30명	5명	11명	215명
비 용 항목기재	·	·	·	46명	11명	21명	4명	·	40명

(일반인 중에는 전직 검찰 직원이 22명, 전직 법원 직원이 4명, 전직 경찰관이 5명 포함되어 있음)

마. 검찰 수사결과

(1) 검찰의 1999. 1. 10.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MBC 제출 장부 및 추가 입수 장부의 분석내용, 사무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검찰에서 이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MBC 제출 장부는 대체로 자신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오래 전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것은 없고, MBC 제출 장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분량이 적고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 중 수임비 내역표로 보도된 자료는 자신이 미수금현황표로 작성, 관리해 오던 것이고, 미수금현

항표 중 문제된 '비용' 항목은 김현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사무장이 수입에 관여한 사건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자신은 소개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검찰의 1999. 1. 11.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 판검사들의 경우 직접 전화로 의뢰인을 알려 주거나 의뢰인들이 판검사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사들은 아는 사람이지만 돈을 준 적은 전혀 없으며 일부 판사는 자신과 사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의 1999. 1. 12.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사무장의 자수 및 철야 조사내용과 이 변호사 재소환 철야 조사, 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압수수색,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작업, 현 사무장 김 소환 조사, 소득세 신고자료 입수분석, 이 변호사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중이라는 내용, 김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공갈협박은 대체로 시인하고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자수하면서 사전 대비한 듯 철저히 부인하였다는 내용,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찰의 1999. 1. 13.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변호사가 1994. 1 - 1997. 7. 까지 검찰 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김 사무장도 폭력행위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과 1994. 1. - 1997. 7. 사이에 검찰직원 등 107명으로부터 225회 사건을 알선받고, 사건 소개비 1억2,950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사 사건 취급 경찰관 31명으로부터 44회 사건을 알선받고 직무에 관하여 2,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여 그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 압수 컴퓨터의 삭제 파일 복구작업, 이변호사, 가족, 사무원, 김 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입수, 분석 등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의 1999. 1. 14.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이, 김 에 대한 구속집행 사실과 함께 압수 컴퓨터 4대의 삭제 파일을 완전히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1993. - 1997. 사건 수입명세서(36매)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내역이 적혀 있고, 사건내역, 진행사항, 수입금액만 적혀 있을 뿐 문제 장부와 같이 '소개인',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복구된 파일은 모두 업무용 파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외에 관련자 본적 소

한 조사 준비, 그 날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검찰의 1999. 1. 16.자 기자 브리핑 자료에는, 검찰 직원 등 관련자 39명을 소환조사하였다는 등 전날의 수사상황과 아울러 그 날의 수사계획, 그 다음날의 수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대검찰청의 1999. 2. 1.자 '대전 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판검사의 사건소개 부분 수사결과' 항목에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음. 판사 검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는 내용이(위 항목의 '소개 유형'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개 -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 2명 - 검사장 1명, 고검 검사1명'이라는 내용이 있음) '판검사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항목에, '이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검찰의 조직과 검사

검찰청법에 검찰의 조직과 검사의 권한 및 지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유기적 조직체이고, 또 한편으로 검사는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며, 또한 검사는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정원은 1,284명, 현 인원은 1,151명이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9명,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8명, 현 인원은 6명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9. 1. 7. 21:00경 이른바 '대전 이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위와 같이 1999. 2. 7.경까지 세칭 '대전 이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방송 내지 제18방송이 검사 직업군을 포함한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자정을 촉구한 것일 뿐이고, 그 구성원인 검사 개개

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다룬다.

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1) 방송보도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보도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제1방송은 검사들 중 ‘지청장을 거쳤던 L씨, 전직 부장검사인 K씨, 현직 검사인 J씨’를 지칭하고 있고, 그 방송 중 ‘검사’, ‘검사들’이라는 표현도 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5방송은 전현직 판검사 33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지청장을 거쳤던 L씨, 전직 부장검사인 K씨, 현직 검사인 J씨’와 전현직 검사 33명이 원고들로 특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방송이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8방송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지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검사들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고, 검찰총장이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9, 10, 13, 14, 15, 16, 17방송은, ‘검사들’ 또는 ‘검사’를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은,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거나, 위 각 방송 이전에 이미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대전’, ‘이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검사들’ 또는 ‘검사’, ‘대전지역 검사들’이라는 집단의 표시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나) 1999. 6. 17.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임(따라서 대전지역 검사는 31명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각 방송 당시인 1999. 1. 7.경부터 1999. 2. 7.경까지 사이의 검사의 현 인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대전 지역검사)의 현 인원은 위와 비슷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 위에서 본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중 일부인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은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1)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방송보도가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을 보도(이하 이를 합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라 한다)함으로써, 피고 서 은 그 중 이 사건 제4, 11, 12방송의 각 해당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제3방송

‘한번 떡값 천만원’이라는 표제로 ‘이 변호사가 명절 때 검찰과 교도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떡값 명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저인망식으로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떡값, 그것도 주로 검찰 하위직원에게 건네진 떡값이 1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 사무장을 통해 중·하위직 직원들에게 건네진 떡값의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할 때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4방송

‘말았다 하면 승소’라는 표제로 ‘이렇게 아래위로 로비를 한 덕분에 이 변호사는 말은 사건을 의뢰인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라는 부분과 피고 서의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자신이 원한대로 검찰에서 석방됐습니다. 사기혐의로 내사를 받던 차모 씨는 검찰에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사기혐의의 이모 씨와 건축법위반 혐의의 조모 씨도 이변호사의 도움으로 내사종결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 실제로 이변호사는 개업한지 열 달만에 형사사건을 무려 332건이나 수임했고 90%가 넘는 사건을 제 뜻대로 요리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전지역의 검사 ... 들이 이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 전관예우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제6방송

‘사실상 브로커’라는 표제로 대전지방검찰청을 배경으로 ‘이번 수임비리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경찰 직원들까지 개입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이면 서로 업무상 알게된 피의자들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등 이변호사의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종기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 이 사건 제7방송

‘사건 주고받고’라는 표제로 ‘이 변호사의 비밀장부를 살펴보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판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재판을 맡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창을 들고는 상대에게 방패를 구해준 격이니 이런데서 과연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제8방송

‘원하시는 대로’라는 표제로 ‘대전 범조비리 사건의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희망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수사 종결, 보석, 의뢰인들이 이렇게 원하면 이변호사는 전관예우의 풍토에다가 학맥을 동원한 집요한 청탁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정수표 피의자 서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희망했고 이변호사는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최모 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수사가 아예 종결되었고 불구속 제의를 요청한 다른 피의자들 역시 희망사항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이변호사는 확실한 전관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변호사가 자신과 같은 출신 학교의 판검사들을 상대로 다른 변호사보다 더욱 집요한 청탁을 한다는 사실은 의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김모 씨(의뢰인) : 사무장이 이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했다. 작업해야 되니까 돈 부쳐라 검사 판사에게 작업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천만원 줬다’, ‘실제로 이 변호사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선후배 검사들은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이변호사가 노골적인 청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변호사에게 패소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아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제보자) : 검찰이 정상적으로 잘 조사하다가 이변호사가 뭐라 그러니까 사건 종결시켰다’라고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변호사에 대하여 전관예우를 하거나 또는 학맥 또는 돈을 통한 청탁을 받고는 사건을 이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바) 이 사건 제11방송

‘판검사 돈 받았다’라는 표제로 피고 서의 ‘이변호사의 네 다섯개 예금계좌 가운데 1개 계좌에서 매달 수천만원씩 인출돼 판검사들에게 송금되었거나 떡값 명목 등으로 건네졌습니다. … 이변호사가 대전지검 검사들에게 유명화가인 김모 씨의 미술작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이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사) 이 사건 제12방송

‘실망 … 분노’라는 표제로 피고 서 ○의 ‘대가없이 떡값이나 향응으로 수백만원이 오고 갔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검찰이 과연 이변호사와만 검은 거래를 했겠느냐며 반론하고 이번 사건도 결국 한 차례 떠들썩한 소동으로 끝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라는 보도 부분을 방송함으로써,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라. 주장의 당부

그러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제3, 4, 6, 7, 8, 11, 12방송을 보도함으로써, 피고 서 ○은 그 중 이 사건 제4, 11, 12방송의 각 해당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위 각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에 따라 결국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의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 및 피고들의 다툼은 각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진실성 여부

(가) 이 사건 제3방송

피고들은 이 방송보도의 내용이 이 ○ 변호사가 교도소와 검찰 안내실에 각 90만원과 60만원을, 검찰 기사실에는 150만원을, 수십명의 여직원들에게도 각각 5만원씩을, 지방과 고검의 하위직 공무원 54명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떡값을 지급하는 등 떡값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모두 합쳐 1천1백만원이 넘으며 아울러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전달된 떡값의 규모는 미루어 짐작된다는 것으로,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이 ○ 변호사가 개업한 1992. 8. 이후 발표 당시까지 대전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 25명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방송은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사실 적시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가)항} 본 바와 같고, 그 부분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라 할 수는 없으며, 위 방송보도의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방송

피고들은, 담당 기자인 피고 서 이 대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과거 대전지역 검사들이 명절 떡값 등으로 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변호사와 검사의 연관성으로 문제삼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소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자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와 뒷거래를 한 후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나)항} 본 바와 같은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6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사무장 김 과 공모하여 1994. 2.부터 1997. 9.까지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0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함께 금 1억1,1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 28명, 전직 검사 3명이 사건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표시된 사실의 세부에 있어 다소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면 그 전부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담당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적시가 포함되

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다)항}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부분이 세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7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경우가 2명(검사장 1명, 고검검사 1명)이 있어 자신이 맡던 사건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보도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할 지라도 진실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의 중요 내용은 대전지역 검사들이 사건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검사들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준 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임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라)항} 본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검사장이나 고검검사가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8방송

피고들은 이 부분 보도는 모두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으로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2의 마의 (3)항} 보기로 한다].

(바) 이 사건 제11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대검 수사결과 일부 검사가 많게는 1천만 원 상당까지 여러 명목으로 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위 보도는 전문적인 수사관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취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받고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의 (바)항}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보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토대로 한 다소 과장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보도가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

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제12방송

피고들은,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4명, 약식기소 1명으로 모두 11명을 형사 입건하고, 34명을 경고 등 징계조치하였고, 검사의 경우 딱깃 수 수액수에 따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는 것인바, 검사 등에 대한 형사입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이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로 끝내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방송에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2의 다의 (2) (사)항} 본 바와 같은데, 이를 진실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 서 이 소외 김 으로부터 위 이 변호사의 수임장부를 넘겨 받았는데, 그 당시 위 김 의 설명을 들었고, 위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찰, 법원 등 직원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취재원들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하였고, 소외 고 기자가 위 김 의 사촌 형인 소외 복 등을 통해서 위 수임장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외 박 기자는 제보를 해 온 취재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자료 및 취재, 그리고 그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한 사실은 위에서 (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으나, 오히려 피고 서 을 비롯한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에 이 변호사 및 대전지역 검사들을 상대로 취재한 적은 없었음에도 위에서(1의 다항)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피고들이 보도내용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보도행위로 위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의 횟수, 이 사건 명예훼손 보도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영향력, 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위 원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시청자들에게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및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정정보도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 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방송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가 보도된 횟수 및 비중,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상단에 두 줄로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대전 변호사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방송 후 그 다음날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시작 후 두 번째 순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함이 상당하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

고 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에게 위 나항의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 원고 이 , 원고 정 , 원고 김 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중 마지막인 이 사건 제12방송이 보도된 1999. 1. 24.부터(원고들은 1999. 1. 7.부터의 지연손해배상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보도 전체를 감안하여 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총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명예훼손이 끝난 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6.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2.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영 선

〈별 지〉 정정보도문

문화방송은 지난 1999년 1월 7일경부터 1999년 2월 8일경까지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대전 변호사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중 1999년 1월 9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15일,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4일, 각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7회에 걸쳐, ‘대전지역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로비를 받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로비를 받아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방송과 대전 문화방송 서 기자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당시 대전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 지〉 기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1. 7. 25.자 판결 (2000가합5156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5일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엄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

의 속성상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이 2000년 1월 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하로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정해진 치료비 외에 다른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0년 1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0서울중재24, 25)을 하여 중재결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은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반론보도청구사건은 합의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51563 손해배상(기)

원 고 : 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형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

변론종결 : 2001. 6.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범수의 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황

(1) 원고는 1989.경부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위 대학교 부속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수술, 치료 분야에 있어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 구순구개열은 선천적인 장애로서 그 환자들은 보통 생후 몇개월 내에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성장하면서 2, 3회 정도의 수술을 더 받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원고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 전에 벌어진 잇몸을 조여주는 고정장치인 라쌈(Latham)을 부착하는 시술을 하여 왔다(이 시술은 원고가 미국에서 습득하여 온 것으로서 1992.경부터 직접 위 장치를 제작, 사용하였다).

(3) 원고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위 성형외과 소속의 전공의(레지던트)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부모들로부터 병원에 수납하는 치료비 외에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금액을 3-40만원으로 정하였다가 1996. 초부터는 7-80만원으로 하였다. 원고가 1996. 초부터 1999. 12.경까지 라쌈을 이용하여 치료한 구순구개열 환자는 41명 정도이다.

(4) 전공의들은 환자 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요구함에 있어 그 명목에 관하여 일부 부모들에게는 '원고가 개발한 라쌈의 제작비 등 비용으로 위 금액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른 일부 부모들에게는 '불우환자를 돕는 민들레회 활동에 사용하려고 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위 두 가지 취지를 모두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전공의들을 통하여 받은 돈을 조흥은행 계좌(예금주 :)에 입금하고 전공의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6) 한편, 원고는 1994.경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 및 의료진 사이의 정보교환, 상담, 불우환자 돕기 등을 목적으로 한 '민들레회'를 조직하고, 그 회지를 발행하거나, 캠프, 송년모임 개최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수사경위 및 결과

(1) 경찰(수서경찰서)은, 1999. 12.경 원고가 직접 환자 부모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원고를 사기 혐의(1996. 2.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위 라쌈이 의료보험이 되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환자 부모들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몇 차례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환자의 부모 41명으로부터 함께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 및 이에 부수하여 수수한 돈의 사용처)로 수사한 후 2000. 2.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경찰에서 조사한 환자 부모들(3명)은, 전공의들이 라쌈의 제작비 등 비용으로 7-80만원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위 금액을 요구하여 병원수납 창구가 아닌 전공의들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검찰의 조사에서는 위 환자 부모 3명이 불우환자를 돕는 민들레회를 위한 성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 환자 부모 41명에게 보내어 답신을 받은 설문조사서(돈을 준 명목이 민들레회 활동을 위한 성금인지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 명목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는 형식)에서 그 중 31명이 성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주었고(금액이 2-30, 52만원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음), 5명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성금 명목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주었다는 답신을 보내온 사람도 1명 있었다.

(4) 이에 검찰은 2000. 6. 23.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라쌈의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이 되나 그 제작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환자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민들레회의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취재경위

(1) 피고 소속의 박 기자(당시 경찰서 출입기자, 이하 '위 기자'라 한다)는 1999.

12. 중순경 한양대학교 동문회 관계자로부터 ‘원고가 수년간 라쌌 시술을 해 주면서 환자 부모들로부터 병원에 내는 치료비 외에 별도로 많은 돈을 받아왔는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세계일보에 보도되었다’는 제보와 함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의 개업의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회’에서 경찰에 원고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제출한 진정서, 환자 부모들의 명단·주소록, 원고에 대한 위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2) 위 제보 이전에 1999. 12. 10.자 세계일보는 ‘모대학병원 A교수 등이 언청이 무료수술비 명목으로 모금한 성금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언청이 치료에 사용되는 치아교정기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15,490원인데도 환자들에게 특수교정기라고 속여 개당 7-80만원을 받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3) 위 제보에 따라 위 기자는 담당 상사인 송 차장과 협의하고 그로부터 정식으로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한미회의 총무인 홍 (원고의 과거 제자로서 현재는 개업의), 환자 부모들(2명), 수사경찰서의 담당자, 세계일보 기자 등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4) 위 홍 은 위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과거 원고의 지시에 따라 환자 부모들에게 라쌌의 제작비가 40 또는 8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걸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환자가 사춘기 때까지 최소한 3-4번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안냈을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 기형아니까 병원비에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낸다’, ‘환자가 한 달에 한두 명 정도고 돈을 받은 지 10년쯤 되었으니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위 기자가 통화를 한 환자 부모(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환자 부모 중 1명의 처)도 ‘전공의들이 라쌌을 직접 재료상에 가서 사와야 되고 자기들이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해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6) 위 기자는 수사경찰서에 찾아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편철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통장 등을 카메라로 찍어 두었다.

(7) 한편, 위 기자는 2000. 1. 6. 카메라 기사를 대동하고 위 병원 원고의 교수연구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환자 부모들에게 일종의 성금조로 민들레회 행사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내도 좋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돈을 민들레회 활동에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3-40만원 정도 받아서 민들레회 활동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부모들에게 비용을 조금 더 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를 종합, 편집하여 2000. 1. 6. 피고가 운영하는 MBC TV방송의 밤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지 보도내용과 같이 뉴스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웃돈 3,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사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마치 치료비 외의 부정한 돈으로 3,000만원을 한꺼번에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고, 구체적인 보도내용에서도 악의적인 편집과 표현으로 원고가 환자 부모들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강제로 돈을 뺏어낸 악덕의사로 비취지게 하였으며, 그 돈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민들레회 경비를 위한 자발적인 성금 명목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표현하여 결국 원고가 환자 부모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다른 치료비의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받아 이를 유용한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의사라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원고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인터뷰 장면의 촬영에 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구순구개열 치료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제자(전공의)들을 통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치료할 때마다 4-70만원, 4년간 합계 3,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형 상태의 구순구개열 환자의 입부근의 사진, 범죄일람표, 통장을 찍은 사진, 원고의 과거 제자인 위 홍 의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방영하고, 처음부터 원고가 받은 돈을 ‘웃돈’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도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저명한 의사인 원고가 구순구개열 환자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치료비 외에 상당한 금액의 정당하지 못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한편 보도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한꺼번에 3,000만원을 받았거나 강제로 돈을 뺏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 돈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민들레회의 경비

를 위한 성금이라는 원고의 반론과 함께 성금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비의 명목이라는 환자 부모의 주장을 인용,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라팜 재료구입, 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암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재경위 및 보도내용에 의하면 위 기자가 당시에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위 돈의 수수 명목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한 채 수수 명목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점을 이 사건 보도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위와 같은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대한 의문제기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환자 부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성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민들레회 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의과대학 교수로서 대학병원의 의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판과 신용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금품수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사실보도에 기초한 수수 명목 사용처에 관한 위와 같은 의문제기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는,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위 화해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재화해조서(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화해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제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반론보도청구 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살핀다.

가.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와 그 한계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하여 보도를 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예를 들어 관련

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때 등) 언론기관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함께 보도함으로써 의혹 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러한 경우가 더 많다)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한 위와 같은 가치형량의 전형적인 한 예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된다),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리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명예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한 가치형량에 비추어 타당하다(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그 내용에 있어 진실하거나

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및 환자 부모들과 위 홍 등 사이에서 원고가 수수한 돈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고, 위 기자가 취재 당시에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상반되는 여러 자료들(경찰에 출두했던 환자 부모들 3명은 성금이 아닌 라쌌 제작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홍은 원고가 민들레회 설립 이전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을 확인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위 돈의 수수 명목 및 사용처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환자 부모의 주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인용,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간접적, 암묵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위 돈을 성금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민들레회 활동 경비 외의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피고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함께 보도하였고, 그 상반되는 주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그 상반되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의문제기 보도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보도 및 정당한 의문제기 보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7. 25.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보도 내용〉

제 목 : ‘웃돈 3천만원’

[구순구개열 환자의 입 부분, 라쌌, 돈다발의 사진 아래 ‘웃돈 3천만원’이라는 자막이 있는 화면을 배경으로]

〈뉴스 진행자 김은혜 앵커〉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가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아기들을 치료하면서 규정된 진료비 외에 웃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입니다.

[차례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전면, 라쌌장치,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일람표 일부, 라쌌 명의 통장을 찍은 각 화면]

〈박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엄모 교수,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장애아들을 치료하는데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교수는 입천장을 모아주는 ‘라쌌’이라는 특수치료기를 통해 장애를 겪고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때마다 규정된 치료비 외에 별도로 40 내지 70만원의 웃돈을 아기들의 부모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엄교수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지난 4년간 제자를 통해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웃돈을 요구받은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순순히 돈을 내줬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엄모 교수 제자와의 인터뷰 장면 아래 그 제자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엄모 교수 제자〉

기형아니까 병원비에 그 정도를 내야 한다고 그러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돈을 낸다.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실 표지 화면]

〈박 기자〉

엄교수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장애아 모임인 민들레회의 경비로 쓰기 위해 성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모 교수의 신체 중 얼굴 아래 부분만 나오는 화면 아래 엄모 교수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엄모 교수〉

민들레회 활동에서 돈이 너무나 부족했다. 할 수 없이 (부모들에게)돈을 조금 더 내시라고 말했다.

[수서경찰서 정문을 배경으로 박 기자의 전면 화면]

〈박범수 기자〉

하지만 경찰에 출두한 부모들의 말은 다릅니다. 성금 형식이 아니라 보험이 안되는 치료

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환자 부모와의 전화 인터뷰 통화 장면 옆에 환자 부모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

〈환자 부모〉

자기네가 직접 재료상에 가서 사와야 하고,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갈라진 구순구개열 환자아이 입부근 화면]

〈박 기자〉

임교수에게 앞으로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 입니다. □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자 판결 (99가합2207)

서울고등법원 2001. 7. 26.자 판결 (2000나2574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6일 전직 검사가 조 씨가 문화방송과 소속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 있는 공중파 TV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문화방송이 1999년 3월 6일과 3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과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던다면 조모 씨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소외 조모 씨를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모 씨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조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99가합2207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호 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정 익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이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사회부 기자실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박 성 민, 송 두 환, 김 응 조, 백 승 현, 조 광 희, 안 식,
윤 복 남, 김 희 제

변론종결 : 2000. 4. 7.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2000.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3. 서울지검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재직하고 있던 검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소외 박 은 1994. 10. 13. 소외 조 을 '사기죄'로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8.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검사는 위 박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참고인증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박 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은 1996. 12.경 제기되어 위 조 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박 은 1998. 9. 3. 참고인증지 되어있던 경찰고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성남지청에 제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같은 달 24. 이 조 을 소환하여 위 박 과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조 은 조사를

받는 동안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조 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동인을 일단 긴급체포한 후 청내 경찰관실에 1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가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위 조 이 합의기간을 달라며 호소하자 원고는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 점을 참작하여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귀가조치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 위 조 이 약정한 기간까지 위 박 과 합의도 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따로 위 사건이 참고인증지결정된 이후 위 조 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위 조 을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바. 한편 위 조 은 1999. 3. 2. 피고 회사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이 를 찾아가 이 중기소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동일 사건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웃더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이 는 동인을 취재한 다음, 같은 달 3. 원고를 찾아가 위 조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소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는데 사실이냐며 물었고, 이에 원고가 '위 조 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단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써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정확한 업무착오원인은 사건기록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고 이 는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며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성남지청 형사1부장실을 방문하였다가 형사1부장 검사로부터 다시 한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고도 원고와의 약 40여 분간에 걸친 대화내용을 원고 모르게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아 이를 편집한 후 별지 제1목록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이 위 기사를 방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위 조 의 허위주장은 선명하게 그대로 내보내고, 조 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해설을 첨가한 후 원고의 이중기소 경위에 대한 약 40분간에 걸친 해명은 방영하지 않은 채 조 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는 일부 진술만을 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고 한다) 하였다.

사. 위 보도가 나가자 성남지청 소속 양 검사는 1999. 3. 12. 위와 같은 보도의 제보자인 위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긴급체포하였고, 위 조 으로부터 1998. 9. 24. 조사 당시 검사나 계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같은 달 13. 성남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 그러자 피고 이 는 별지 제2목록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9. 3. 21. 피고 회사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위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한편 위 조 은 횡령죄로 이중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1999. 2. 5.경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같은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해 3. 12. 성남지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결국 1999. 8. 31.경 검사직을 사직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23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선,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방송보도의

제목, 배경화면과 자막,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사건이 참고인증거되었다가 재기된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주임검사인 원고가 위 조 의 범죄경력조회를 새롭게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인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인을 이중기소하였고,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하여 특히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를 직무로 하는 검사가 경합범, 누범, 상습범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결격사유 등의 전제가 되는 전과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조 의 변소를 묵살하고 고의로 이중기소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더구나 위 조 은 사기로 고소당하였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원고가 범죄경력조회를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조 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새로 해보는 것만으로는 같은 사건으로 위 조 이 처벌받았는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그에 관한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조사해 보아야 이미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는지 알 수 있다), 위 조

을 긴급체포하였다가 석방한 것 역시 불법구금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방송이 나간 후 위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구속수사한 것이 보복수사라고 할 수 없음에도(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방송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아래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구요...”라는 위 조 과의 인터뷰내용을 영상과 함께 방영하면서, ‘검찰이 위 조 을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가 동인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풀어주었고, 한달이 지나도 위 조 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검찰은 동인을 횡령혐의로 이중기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중기소는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제2방송에서는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위 조 과의 인터뷰내용을 다시 방영하고, “다분히 수사기관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라는 소외 차 과의 인터뷰내용을 방영하면서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여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던 바, 위 각 방송보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중기소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조 을 조사한 검사가 동인을 이중기소하였다는 표현만으로도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위 방송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제1방송을 편성하면서 제목에서 '한심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수사검사인 원고가 피의자의 정당한 항변도 묵살하는 수준 이하의 검사라는 인상을 단정적으로 심어주었고, 사실 원고가 위 조 을 제기소한 것은 위 조 이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위 조 을 조사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피의자의 항변을 웃으면서 고의로 묵살한 것처럼 위 조 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내용 전체의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마치 피해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가형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구금을 하였으며, 사법사상 최초로 이중기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방송에 대하여 보복감정으로 위 조 을 상대로 검사로서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처럼 표현을 하여,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이 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각자 이 사건 각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 사건 각 방송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방송보도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중기소를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나아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보복수사를 하여 제보자를 구속시켰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망오도하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은 일부 허

위의 사실이 포함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들은,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공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인이라 할지라도 방송보도에 의하여 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 보도매체의 성격과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청률이 매우 높고 영향력이 큰 공중파 TV의 정규 뉴스시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를 한 점,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이 피해자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해관계 있는 일방당사자이므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일방적 진술을 인용하여 보도내용이 편집방영된 점,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한다기보다는 이중기소의 경위, 보복수사인지 여부 등을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치밀하게 취재하여 정확한 보도를 하였어야 할 내용인 점,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정한 취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 일반 시청자가 원고를 수준 이하의 편파적이고 불성실한 검사라고 단정지을 정도로 보도의 관점이 명확하게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검사라는 직책을 가진 공인이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도를 방영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속한 보도는 정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고, 오보, 허위보도, 엉터리보도, 왜곡보도는 신속할수록 그 폐해가 커진다. 더구나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을 자부하는 공중파 TV 정규뉴스의 경우 일반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방송사가 언론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신문·잡지의 독자층과 일반 TV의 시청자들이 그 보도나 기사를 수용하는 태도, 경향, 수준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는 현실에서 방송뉴스의 일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TV 시청자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내용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신분,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직을 사직한 점,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 나아가 검찰이 부당한 법집행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왜곡된 법집행을 하기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 점,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방송일인 1999.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한다.

2000. 4. 28.

재판장 판사 박 찬

판사 이 승 연

판사 김 국 현

〈1. 1999. 3. 6.자 뉴스데스크 보도〉

제 목 : ‘한심한 검찰’

내 용 : ▷박 앵커 : 형사소송법에는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해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 :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모씨 :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구요….

▷이 기자 :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이 기자 : 전과조회는 기본인데, 컴퓨터로 확인했지요?

▷계장 : 아니요, 안했어요.

▷이 기자 : 결국 조씨는 횡령한 돈을 갖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조씨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검찰은 조씨를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담당검사는 당시 사건이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담당검사 :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됐으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

▷이 기자 :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 입니다.

〈2. 1999. 3. 21.자 뉴스데스크 보도〉

제 목 : ‘보복수사 논란’

내 용 : ▷권 앵커 :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검찰의 잘못으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을 해서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 :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 97년 3월,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9월 조씨는 같은 검찰청의 또 다른 검사에게 다시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결국 성남지청 조 검사에 의해 이중기소돼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유는 조씨가 본사와 인터뷰한 다음 내용입니다.

▷조모 씨 인터뷰 :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검사와 계장)이 웃더라.

▷이용마 기자 : 검찰은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 측에 허위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중 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 다분히 수사기관의 감정이 개입된 그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 기자 :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 입니다.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0나2574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조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강 호 성, 손 석 봉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2. 0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류 용 현

판 결 : 2001. 5. 24.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 선고 99가합2207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1.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향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23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이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인 1999. 8. 31.경 사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

(1) 피고 회사는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조 에 대한 검찰의 이중기소 사실을 보도하였다. 당시 앵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고 이 가 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성남시 동에 사는 조모 씨로 익명보도 됨)이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반이 지난 1998. 9.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이 웃더라구요...”라고 하는 조 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피고 이 기자가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기본적인 전과조회를 실시하였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검찰 참여계장의 부정적인 답변을 방송하였다. 다음 피고 이 기자는 조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났다가 한 달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그를 횡령죄로 이중기소하였다고 설명한 후 담당검사는 사건이 고소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었기에 조 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무슨 잘못을 할 수 있겠나. 잘못 났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날 것 아닌가”라는 내용의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고, 위 이 기자가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1999. 3. 21.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명예훼손혐의로 조남환을 구속한 검찰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당시에 앵커가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검찰이 사과는 커녕 조 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여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 후 피고 이 기자가 조 이 성남지청 조 검사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검찰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 을 출판

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문제가 된 이 사건 제1방송에서의 조 과의 인터뷰 부분을 보도한 후 피고 이 기자가 검찰은 조 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면서 검찰을 비방하기 위해서 문화방송측에 허위제보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중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논평한 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후, “검찰의 명에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설명으로 보도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다. 방송의 경위

(1) 박 은 1994. 10. 13. 조 과 김 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자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조 과 김 을 성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 28. 성남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지 아니한 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되다가 경찰고소사건도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위 박 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94년 말경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박 의 소재가 발견되자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은 1996. 12.경 재기되어 조 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위 법원은 1997. 3. 21. 위 조 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2) 한편, 박 은 1998. 9. 3.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있던 경찰고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성남지청에 재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 원고는 같은 달 24. 조 을 소환하여 박 과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조 은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을 호소하였을 뿐 원고나 참여계장에게 자신이 같은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조 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후 5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동인을 일단 긴급체포한 후 청내 경찰관실에 1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가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는데, 위 조 이 합의기간을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 점을 참작하여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긴급체포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조 을 귀가조치하였다.

(4) 그러나 그 후 조 이 약정한 기간까지 박 과 합의도 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자, 원고는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상의 범죄경력조회 외에 따로 제2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이후 위 조 에게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8. 10. 23. 위 조 을 횡령죄로 성남지원에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조 은 그 공판기일인 1999. 2. 5.경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합의를 위한 시간만을 요청하여 다음 공판기일이 1999. 3. 12.로 지정되었다.

(5) 한편 조 은 1999. 3. 2. 피고 회사 성남지국 사무실로 피고 이 를 찾아가 제2사건으로 인하여 이중기소되었다고 제보하면서 원고나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검사에게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말했더니 웃더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6) 피고 이 는 조 을 취제한 다음, 1999. 3. 3. 원고를 찾아가 위 조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정판결문까지 제시하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변소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구금하였다가 그래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자 이중으로 기소하였다는데 사실이나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조 이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단순히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주임검사로서 업무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검사로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중기소를 할 검사는 없고 그러한 일은 검사로서는 자살행위이다. 오해로 인한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이 는 참여계장과 고소인과의 결탁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 해명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성남지청 형사 1부장실을 방문하였는데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도 다시한 번 진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해에 기한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으나 원고와의 약 40여 분간에 걸친 대화내용을 담은 카메라와 녹음기의 내용을 편집한 후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목록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보도국으로 보냈고, 보도국은 1999. 3. 6.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7) 위 보도가 나가자 제2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1999. 3. 12. 성남지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성남지청 소속 양 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방송의

제보자인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긴급체포하여 조 으로부터 1998. 9. 24. 조사 당시 검사나 참여계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1999. 3. 31. 조 을 성남지원에 구속 기소하였고, 성남지원은 조 에 대하여 1999. 5.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그러자 피고 이 는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2목록 방송내용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9. 3. 21. 피고 회사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방송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방송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중기소된 조 의 주소를 적시하였고 보도와 함께 나간 화면으로 성남지청 건물을 보여 주어 원고가 성남지청의 검사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 는 하나 원고가 집무하는 검사실의 앞에 걸린 검사실의 호실과 검사명 표시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원고의 해명을 방송한다면서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상당수의 일반인도 조 을 이중기소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방송의 보도에 있어서는 “성남지청 조 검사”라고 특정하여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2) 책임의 성부

이 사건 제1방송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검사인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더라면 조 이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까지 된 조

을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은 이중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 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이 사과를 커녕 오히려 조 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정하고도 사려 깊게 수사 및 기소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검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보도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검사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원고에 대한 악의가 엿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실성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의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 기자의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은 조씨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위 표현 중에서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고, 검찰이 조남환을 구금하면서도 경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을 당시에 첨부되어 있던 약 4년이 경과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조 본인의 형식적인 진술에 의하여 전과를 확인한 외에 경찰에서의 범죄경력조회 이후에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전과조회를 하고 의문이 드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 을 신문하거나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 이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겠다고 3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구금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조 을 구속하겠다고 구금하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 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긴급체포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조 을 긴급체포하여 구금한 것을 불법감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이 가 이 사건 제1방송에서 불법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이중으로 기소할 수 없음에도 검사가 전과확인을 게을리하여 조 이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구금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법조인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방송 중 이 기자의 “한 번 형이 확정된 조씨는 사법사상 처음 같은 사건으로 또 한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설명 부분

이 부분 중 조 이 동일한 범죄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과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도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중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원고가 전과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 을 이중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방송 중 조 과의 인터뷰 방영부분

언론기관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에 그것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발언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만일 인터뷰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책임은 부정될 것이나 적어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첫째,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제1방송의 전체 문맥으로 보아 조 ○○ 이 검사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문이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검사나 검찰 참여계장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서, 조 ○○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합의기간을 달라고 호소하여 업무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해명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며,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고,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취재시에 담당 검사인 원고나 검찰 참여계장이 조 ○○ 의 위 진술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음에도 제1방송에서 방영된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응하는 원고나 참여계장의 진술부분은 조 ○○ 의 진술에 대한 해명이라기 보다는 기자의 설명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방영하였으며, 셋째, 방송의 제목으로 뽑은 ‘한심한 검찰’과 중간에 덧붙인 조 ○○ 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는 설명, 끝에 부가한 조 ○○ 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증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 등과 앞서 본 원고나 참여계장 진술부분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위 조 ○○ 에 대한 인터뷰 부분은 피고들의 방송 의도에 부합하여 의도적으로 방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 ○○ 에 대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방영은 조 ○○ 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이 위 인터뷰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 ○○ 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조 ○○ 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 변소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소하였다는 사실은 실수로 조 ○○ 의 전과조회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증기소하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는 점, 피고 이 ○○ 가 원고에 대하여 취재할 당시에 원고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 ○○ 의 변소를 묵살하고 이증기소를 하는 경우 조 ○○ 이 법정에서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즉각 변소판결이 선고될 터인데 검사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 다시 기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조 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합의를 볼 시간만을 간청하였을 뿐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제1사건으로 인한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조 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던 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그의 전력이나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기자에게 조 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 조 이 검사 등에게 자신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묵살당하고 이중 기소되었다면 기사를 찾아가 그 부당함을 호소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이미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 으로서는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거나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려 하였을 것이고, 이는 조 과 함께 공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 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와 검찰 참여계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 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그대로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 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관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방송 중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제1방송 중 앞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 앵커의 설명부분과 조 이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풀려났다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검찰이 조 을 횡령혐의로 다시 기소하였다는 부분, 담당 검사가 조 이 이미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컴퓨터 전과조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계장의 부정적인 답변과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한 것이 경미한 잘못이고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을 방송한 부분도 그것이 비록 전체 진술 중에서 방송의 의도에 필요한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이 사건 제2방송 부분 중 조 이 원고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건 제1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검찰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 을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 의 인터뷰 부분을 다시 방송한 부분은 그 전후의 문맥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제1방송에서와는 달리 시청자에게 조 이 진술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제1방송에서 방송된 조 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조 을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 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복수사 논란”이나 “이중기소라는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조씨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조씨의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검찰의 명예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라는 부분은 모두 피고들의 의견의 표명이며, 보복수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한 변호사의 논평을 보도한 부분은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그 변호사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고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전제되는 사실, 즉 조 이 원고에 의해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방송이 나간 후 얼마 안되어 검찰이 조 을 구속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들이 방영한 이 사건 제1, 2방송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이 사건 제1방송 중 조 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방송 중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제사실이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의견의 표명 자체가 전제사실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의견이라면 면책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조 에 대한 이중기소에 관하여 “불법감금”,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한심한 검찰”이라고 단정한 것과, 검찰이 조 의 제1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을 “보복수사”라고 표현한 것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실수를 빌미로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가한 것으로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공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현실적인 악의에 대하여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책임이 경감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의 공적인 관심 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와 관련하여 볼 때 사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널리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나아가 원고가 공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상호 비교형량함이 없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거나 책임이 경감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청률이 높고 공신력이 있는 공중파 TV 방송의 정규뉴스는 특히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신분,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공직을 사직한 점,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찰이 피의자의 변소마저 묵살하고 피의자를 이중기소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듯한 인상을 주어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 점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원고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조 에 대한 전과확인을 게을리 하여 조 을 이중기소하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방송의 표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다소 지나친 것이

기는 하나 공인의 공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6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방송일인 1999. 3.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6.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정 진 경

판사 권 기 훈

〈별 지〉 (방송내용은 1심 판결문 〈별지〉 방송내용 참조 - 편집자 주)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8. 22.자 판결 (98가합10798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8월 22일 현직 교수인 임

씨가 서울방송과 소속 프로듀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는, 언론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 전달, 집약함에 따라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실제적인 보도내용은 원고 개인을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점 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 보도내용이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대학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방송은 1998년 11월 25일 「TV 돋보기, 우리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라는 제하로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키고,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 그대로 책으로 출판했으며,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다는 등 교수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8가합107982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소송대리인 청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성 민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 세 영

2. 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에스비에스

3. 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 에스비에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혜 리, 문 선 영, 강 훈

변론종결 : 2001. 7. 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2001.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

[근거 : 갑 제1~5, 7, 9, 15, 17, 22, 23, 24, 2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이 사건 보도 이전)

(1) 원고는 1968.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의 유학을 거쳐 1978.부터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1998. 6. 5.경 실시한 위 대학교 중어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최 의 논문 지도교수로서 그가 제출한 논문을 심사하였는데, 당시 최 는 원고가 위 논문을 그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일에게 검토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심사하였다면서 항의하자, 원고는 1998. 6. 19.경 최 가 자신에게 폭언과 함께 항의 전화를 하였다면서 위 대학교에 최 의 학적말소를 요청하게 되었다(이에 위 대학교 본부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1998. 11. 9.경 최 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한편, 원고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논문실적, 종교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재된 익명의 민원이 교육부에 제출되었다가 1998. 6. 10.경 위 민원이 위 대학교로 이송되었고, 위 대학교 본부에서 원고에게 먼저 알리지 않은 채 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위 대학교 본부측 및 위 중어중문과 학과장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4) 또한, 1998. 7. 말경부터 위 중어중문과에 논문대리심사, 종교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되었고, 1998. 10. 16.경에는 위 일이 '원고의 지시로 학위논문을 대신 평가하였고, 원고가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원고의 아들을 과외교습하였다'는 등 원고의 교수로서의 자질,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는 내용으로 소위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에 1998. 10. 22.경 위 중어중문과 대학원생들은 원고에 대하여 수업거부를 결의하였고, 위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도 원고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위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원고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도 위 대학교 총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1998. 10. 29.경 위 대학교 본부에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1998. 11. 3.경 위 대학교 인문사회과대학 소속 각 교수들의 연구실에 '나에 대한 모함을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는데, 그날 밤 위 대학교 본부측에서 각 교수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문건을 회수하였다. 이에 위 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는 1998. 11. 19.경 위 문건회수 및 원고에 대한 민원조사 등과 관련하여 위 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7) 위 대학교 본부는 1998. 11. 6.경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1998. 11. 11.경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8) 1998. 11. 13. 내지 14.에는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에서 '원고가 박사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논문심사를 대신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리포트를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수업시간에 특정종교를 언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중어중문과 대학원생들이 원고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 대학교측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기사를 실어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운영하는 SBS TV 방송의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1998. 10.경부터 원고를 둘러싼 위 대학교의 학내분쟁을 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작을 위한 취재에 들어가 위 대학교 본부측 인사, 위 중어

중문과 학과장 및 대학원생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는 1998. 11. 25. 20:40경부터 10분간에 걸쳐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라는 제목으로 별지 내용과 같은 보도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피고 유 는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책임지고 담당 프로듀서(PD)이고, 피고 안 은 SBS TV 방송국에서 뉴스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재권한(전결권한)을 가진 TV 본부장이다(피고 유 는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상급자인 부장과 보도내용을 상의하고 피고 안국정에게도 보도내용의 요지를 보고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후의 사정

(1)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그 보도내용 등과 관련하여 위 유 , 안 , 대학원생인 일, 최 , 위 대학교 총장, 위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2) 한편,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위 대학교는 원고에 대하여 1999. 2. 8. 정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1999. 5. 28. ‘징계의결 요구 전에 사전조사가 없었고 의결요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위 대학교가 1999. 8. 23. 학위논문 대리심사를 사유로 하여(위 최 의 논문 포함) 다시 견책처분을 하자 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999. 11. 26. ‘ 일이 학위논문을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논문들을 추후 검토한 점에서 논문심사를 대신시켰다거나 논문심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견책처분도 취소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위 중어중문과 학과장, 위 일 등 대학원생들(위 중어중문과 대학원 수료, 졸업생 포함)과의 인터뷰 내용 및 아나운서의 멘트 등을 통하여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켰다는 것, 대학원생들이 원고에 대한 분노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다는 것, 원고가 학생들의 번역 리포트를 모아서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였다는 것, 지난 15년 동안 단 두편의 논문만을 발표할 정도로 연구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 자주 지각과 휴강을 하였고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다는 것,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가 셀 수 없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학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제자를 ‘개는 돈 애예요, 정신병자예요’라고 표현하고,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거나 기사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된다는 것, 사태가 심

각해지자 무책임하게 출근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행적을 감춘 채 출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원고에 대한 문제는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는 것 등의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고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의 직업적, 사회적 평판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설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공익성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공익성의 여부

(1)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함은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리는, 언론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 전달, 집약함에 따라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경우 ①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보도 당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만의 인터뷰 내용 및 그에 동조하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측의 주장이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동료교수 또는 교수평의회는 입장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② 이에 따라 보도내용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들(아나운서의 멘트 중 ‘원고는 대학원생에게 박사논문을 대리 심사시킨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것은 원고 밑에 있던 대학원생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의 연구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원고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불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등)이나 원고의 자질 및 인격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과도한 표현들(아나운서의 멘트 중 ‘대학교수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교수’, ‘굶을 대로 굶은 교수의 추한 모습을 십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 박사과정의 졸업생들의 인터뷰 내용 중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 ‘저희 과의 분위기는 어떠하냐하면 선생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 교수님 앞에 석사생이라는 것은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아파트 경비의 인터뷰 내용 중 ‘행방불명이 됐다’ 등)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된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됨으로써 20여 년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쌓아온 업적과 평판이 완전히 무시되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타격을 입게 된 점, ④ 보도의 도입부와 결론 부분에서 우리 나라 대학사회의 본연의 모습 상실과 그 회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도내용은 원고 개인을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원고를 둘러싼 학내분쟁의 경위, 우리 나라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점 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

드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대학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공익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진실성 내지 상당성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SBS TV 방송의 운영자로서, 피고 안 , 유 는 이 사건 보도제작의 최종 결재권자 및 담당 프로듀서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먼저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학내분쟁의 와중에 다수의 대학원생들, 위 대학교 본부측으로부터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가 적시하는 주요한 내용들(특히 원고가 대학원생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하도록 시켰다는 것, 강의내용이 수준 이하였다는 것, 한자도 잘못 읽는 경우가 셀 수 없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거나 기사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원고에 대한 문제는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십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라는 것 등)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측의 주장을 취재하거나 보도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난하는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영한 점, 언뜻 보아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단정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보도의 적시내용과 표현방법, 보도내용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SBS TV 방송의 영향력과 이 사건 보도의 시간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여부 등 보도 후의 정황,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방영일(1998. 1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2001.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1. 8. 22.

재판장 판사 안 영 름

판사 김 경 환

판사 오 석 훈

〈보도내용〉

= TV돋보기, 우리는 지금 =

◎ 박 아나운서

우리는 흔히 대학을 일컬어서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향해서 한 길을 가야 한다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 살아 숨쉬어야 할 대학이 언제부터인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 일어난 어느 한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또다시 우리 대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대학, 대학교수]

(성균관 대학교 전경)

명문사립대로 불리는 이 대학에서 최근 중문학을 가르치는 여교수 문제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수 / 성균관대 중문과 학과장

지금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논문 심사를 대리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

다. 임교수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대학원생을 시켜서 대리심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1, 2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 하기도 전에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교수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 박 아나운서

문제의 임교수는 대학원생에게 박사논문을 대리심사 시킨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것은 임교수 밑에 있던 대학원생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최○○ / 성균관 대학 중문과 박사과정 수료

내가 지적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넘겨줘 가지고 고쳐오라는 식으로 그럼 내가 고치라고 한 것 밖에 안되니까 학생들이 계속 감정이 쌓여왔던 거예요.

◎ 박 아나운서

그럼 몇 년동안 몇 편의 논문을 (대리심사 했나)?

◎ 최○○ / 성균관 대학 중문과 박사과정 수료

지금까지 본 거는 정확하게 수는 세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석사과정에 있으면서도 박사논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40, 50편 되죠. 여태까지 성대에 나온 논문, 하여튼 임교수가 지도한 문헌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90%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 아나운서

박사학위 논문을 대리심사 시킨 것 외에도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분노는 급기야 수업거부를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 리포터를 모아 책을 펴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대가 30년대 평론’ ‘중국어 음학 연구’ 화면)

◎ 김○○ / 강사·성대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완전히, 그것도 기밀리에 학생들은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밀리에 학생 리포터를 모아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제서야 교정을 맡겨 가지고 교정조차 또 학생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없는 거죠, 전혀.

(‘대학원생 번역 리포터’ ‘임교수 번역서’ 화면)

◎ 박 아나운서

대학원생들의 번역리포터와 임교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서문에서로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교수는 대학교수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 / 강사·성대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교수님께서 뭐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제가 여기 입학한 지가 지금 학교를 10년 넘게 다니는데요, 무슨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박 아나운서

지난 15년 동안 임교수는 단 두편의 논문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대학교수 한 명이 십년 동안 보통 15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고 일년에 서너 편을 내는 교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임교수의 연구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임교수는 특하면 지각과 휴강을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강의내용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 천○○ / 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문학사 수업이 뭐냐면, 책을 강독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한자(漢字)도 잘못 읽는 경우는 뭐 셀 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못해 주세요. 상식적인 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질문을 못해 주시고, 몇 번 그게 반복되니까 ‘임선생님께 질문은 고문이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농담처럼 돌면서 질문이란 건 전혀 없는, 그냥 강독이 됐고….

◎ 박 아나운서

제자들이 임교수를 불신하는 이유는 비단 학문적인 자질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은 임교수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도 밝지 못할 만큼 권위 있고 또 그만큼 존경 받아야 할 스승에게서 제자들은 엄청난 불신만 느껴야 했습니다.

학문의 깊이와 수준은 접어 두고라도 임교수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제지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 이○○ 교수 / 성균 중문과 학과장

임○○라는 학생이 있는데, 강사인데 ‘임○○는 뭐 논문 대리심사 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던데요.’라고 했더니 ‘개는 돈 애예요. 정신병자예요.’

◎ 박 아나운서

제자들 보고?

◎ 이○○ 교수 / 성균 중문과 학과장

예, 그런데 임교수 말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 겪고나서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설득(안될까)? 이렇게 대화가 안될까.

◎ 박 아나운서

고동안 학생들은 임교수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 했습니다. 행여나 스승에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임교수는 심지어 제자에게 아들의 과외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최○○ / 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손을 봤으니까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긴 세월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래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또 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니까.

◎ 천○○ / 강사·성균 중문과 박사과정 졸업

우리집 기사가 요즘 몸이 아파서, 그만뒀서, 누가 우리집 기사를 좀 해 줬으면, 이런 식의 발언을 이런 식의 요구를 학생들한테 하세요. 저희 과의 분위기는 어떠냐하면 선생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그게 당연한, 선생님, 교수님 앞에 석사생이라는 것은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 박 아나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교수는 아예 학교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학부생 강의는 강사들이 어떻게든 대신한다지만 무책임한 교수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강의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징계위원회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교수는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임교수에게 징계위원회는 또다시 출두요구서를 보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쳐서 진상을 파악해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교수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임○○ 교수 아파트 경비

한 2주째 지금 나가 가지고 지금 뭐, 행방불명이 됐다. 친척집이고 어디고 다 수배해 봐도 찾을 길이 없다.

◎ 박 아나운서

당사자하고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교수의 자택으로 전화통화 시도 - 임교수 부재, 자동 응답기 작동)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꿈을 대로 꿈은 교수의 추한 모습을 십수년동안 그대로

가 .

1, 2

, 가 .

가 .

○○ / .

가 ,

.

가 .

가 .

가

가

,

2001. 9. 26. (2001가 11180)

25 () 2001 9 26

가 “

, ,
 , ”
 “
 , 가
 가 , 가
 가 , 가 가
 ,
 ,
 ,
 , 1/4 ,
 가
 ,
 ,
 , ”
 ,
 “ 가
 가 ,
 가 가
 , ”
 ,
 2000 12 19 「PD 」 ‘ 2000 ,
 가 ,
 ,
 , 2001 1 8 (2001 8)
 ,

: 2001가 11180 ()

:

: 1.

31

2.

31 (「PD 」)

: 2001. 8. 29.

: 1.

2.

: 100,000,000

: 1.

[] , 1 , 1 8 ,
가.

8 5

30

(, 2000.

12. 29. 22:55 23:55 「PD 」(

)

(1) 2000. 1.

(가

가

)

()

4.

가

9. 5.

가 .

(2) 70

22.

가

가

(3)

(,

) ,

가

(1) 가 (

14 35)

(2)

:

(C)

(6 20)

, , :

, (4 10)

: 가

2.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105)

(7, 8

),

가

가

가 $\frac{1}{4}$

가

가 가

가

가 7, 8

() ()

(3 5).

2001. 9. 26.

PD 2000

: 가 .
(,) : 9 5 가

가 .
() : ,
? ?
() : .
() : 가 ?
: ‘ ,

.) : ? PD .
: . 2000 .

가 . 가 가
,

. 8 5 ,
가

30 .
(,) : 가 ,

가

(,) :

:

: 4 30 ,

:

() :

가

:

(,) : 가
가 가

:

() :

가

:

가 가

(,) : 가

가

가

가

105

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247

가 : , 가 1 1
.
:
93.7%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
.

가

,
,

2001. 9. 26. (97가 68721)

25 () 2001 9 26

가 5

“

가

가

가

”

“

”

가

1

가

가

: 97가 68721 ()

: 1.

2.

: 1.

1가 61

,

2.

3.

1, 2, 3

1, 2, 3

4.

5.

6.

4, 5, 6

: 2001. 9. 12.

: 1. 가.

,

,

10,000,000

,

.

,

(1) 50,000,000 ,

(2) (1) 40,000,000 ,

(3) (1) 10,000,000 ,

(4) 10,000,000 ,

(5) 15,000,000 ,

(6) , 5,000,000 ,

(7) , 5,000,000 , 1997. 9. 2. 2001.

9. 26. 5%, 25%

.

2.

.

3. 70% ,

.

4. 1 가 .

: 1. 가.

,

100,000,000 ,

50,000,000 ,

.

,

가
(2) 1995. 2. 가
, 27 (1), 2 (1), 가 (2), (1)

(3) 가

, 1995. 6.

(4) 가
가
가
가
가

(5) 가 가

(
1 1

(가)

가 가
가 ..."
() 가
가

3 (' 3 ') ,
1997 9 .
1997. 8. 29. 4 (' 4 ')
. (4) 5 (' 5 ')
1997 9 ,
' ' 1997. 7. 17. 6
(' 6 ') . (5) 9 (' 9 ')
1997 8 , ' ,
7, 10, 11 (' 7 ' ; ' 10 ' ,
' 11 ') . (6) , 1997. 7. 23. ' 8
50 ' (' 8 ') .
(1) ' ' 1997. 7. 21.
1997. 12. 29. 가
(,) .
(2) , 2001. 2. 23. 가
, 가
2001. 6. 26. 가 .
2.
가.
1 11 가
, , 1 11
가

·
(1)

(2) ,
 ,
가

(3) ,
가
·
 , 가 ,
(' ')
가 ,
 ,

(4) , 1 11
() (

3.

가.

, 1 11

,

' , ' 가
 ' 가
 ' 1
 ' ,
 ' , ' ,
 ' 가 ' ...
 ' ,
 ' 2 가
 ' ,
 ' (3) 3
 3 , ' 가 가
 ...
 ' , ' 가
 ' ,
 ' 3 가 가
 ' ,
 ' (4) 4
 4 , ' ... , ' 가
 ' ,
 ' , ' 가
 , 가 , '

가 , 가

가 ,

.

(7) 6 , 7, 8, 10, 11

,

, ' '(6),

' ; ' ' ; ' 가 '(7), ' ;

' '(8), ' ... 가 '(10), ' ;

' ; ' '(11)

가 , 가 ,

11 가

.

, 10, 11

' ; ' ;

가'(10), ' 가 ' ;

,

.

4 1 11 (' ;

) , 가

,

가 , ,

,

가 , ,

,

5 , 10, 11

4

4.
가.

가

(1)

가

가

11 ()

가

가

(16, 17),

(28, 29),

가

(82, 83),

가

가

가

, 가

가

(2)

2 11 가 ,

가 , 가

(3) , 5 11 ,

22 ‘ ,

가 ,

가 ‘ ,

가 ,

가 가

(가 1

) , ,

가 ,

가 ,

5.

가.

()

가

가

가

가

1

가

가

5

11

1, 2, 3

50,000,000 ,

1, 2

40,000,000 ,

3

50,000,000

10,000,000 ,

5

10,000,000 ,

9

, 7, 10, 11

15,000,000 ,

6

5,000,000 ,

8

5,000,000 ,

5

10,000,000 ,

10, 11

10,000,000

12

,
 ,
 ,
 6.
 ,
 11 (1997. 9. 2.) (2001.
 9. 26.) 5%,
 25% 가 ,
 2001. 9. 26.

- **
 가
 가

2001. 10. 10. (2001가 1961)

25 () 2001 10 10

가 3

“

.”

“

가

가

,

가

가

가

가

.”

“

가

,

가

가

가

(

),

.

,

가

가

,

.”

.

2000 10 28 「

25 」

가

,

가

2000 11 27

(2000

355)

·
: 2001가 1961 ()

: 1.

2.

3.

4.

3, 4

: 1.

18

2.

: 2001. 9. 5.

: 1. 10,000,000 , 4,000,000 ,

2,000,000 , 2,000,000

2001. 1. 19. , 2001. 1. 18. 2001. 10. 10.

5%, 25%

2.

3. 4 1 ,

4. 1 가 .

: 70,000,000 , 20,000,000

, , 10,000,000

25%

: 1.

, 1, 2, 11 1,
14, 16, 가 1~3, 1~15, 17~31, 33, 34, 37~44, 46~53, 56~69, 72

16

39

가.

(

(1) 2000. 5. 23.

KNC

(

KNC)

30

30

(2)

(가

),

(가

),

, KNC

가

(

)

(3)

2000. 8. 9.

7 ○○○-○○○○○○○

(4)

2000. 9. 27.

(5)

2000. 10. 4.

(가)

2 ○○○-○○○

2000. 10. 28. 22:00

, (가).

.

(1)

.

(2)

가

.

(가)

1998.

1998. 10. 27. ‘

’

, 1999. 4. 22.

()

1999. 3.

,

()

1999. 3. 30.

()

1999. 7.

가

.

()

1999. 10. 5.

()

2000. 4.

KNC

가

,

KNC

가

.

(3)

,

,

가

2000. 11. 22.

,

(4)

가

,

2000. 12. 9. 「

25 」

2.

가.

(1)

가

, 가

, 가 ,

(2)

(가)

가

(27 4), ,

(126) .

,

, 가

가

가

()

, 가 ,

가

가

()

(

)

가

(1)

가

가

(2)

(가)

가

10222

()

(1999. 1. 26. 97 10215,

).

가

가

1. .(2)

가

가 가

가 가 가

(1998. 7. 14. 96 17257).

,

1~6, 8, 10~12 , 13

1, 40, 46~48, 58~63, 69 KNC 가

가

,

,

,

가

.

()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

(1)

,

가

가

.

(2)

가

3.

가

가

4,000,000 , 2,000,000 , 10,000,000 , 2,000,000

4.

10,000,000 ,

4,000,000 , 2,000,000 , 2,000,000

2001. 1. 19. , 2001. 1. 18.
 2001. 10. 10.
 5%, 25%
 가 ,
 ,
 2001. 10. 10.

1

:

:

:

:

:

:

:

:

가
 가
 , 가
 ,
 : “ (41 ,) ”

: ,
.
:
:

:
: 9 27
: (가)

:
:
:
:
:
: , 8
:
: (34,) , 8
: , 가

:
:
:
:
: (34)
:
: (41)
: 가

: 2000 4 4
:

,
.
가

가

•

•

•

•

가

•

가

$$\vdots$$

•

•

•

•

(34 .)

•

•

(가)

•

•

•

•

(41 .)

•

•

•

•

•

•

(34)

•

•

(41)

•

•

32 ,

•

•

•

•

•

•

34

165cm.

가

:

165cm

가 1 2

:

41

:

41

:

051-

851-5905

가

86

10652-6532-6771

6

:

:

25 ,

02

:

가

IMF

: 10 28 ‘

- -

10 28

1.

,

가

,

2.

가

3.

**

가

가

가

2001. 10. 25. (2001 8495)

8 () 2001 10 25 2

“ 가

가

가

가

가

가가

가

가가

가

가

“ 가

가

.”

1 8 2

11 8.8% 11%

가

1 “ 가

.” (1

8 372 377).

: 2001 8495 ()

, : 1.

2.

, :

17가 64-8

가

()

: 2001. 9. 6.

1 : 2001. 1. 10. 2000가 9265

: 1. 1 ,

2.

: 1.

154,922,500 , 5,085,500

25%

2.

: 1.

, 1 1 3, 2 4

, 1, 6 , 1

1

, 1

가.

(1)

(2)

1999. 10. 25. 11:30

(' ')가

(' ')가 2,000

“

1,600

”

(3)

11:49

“

800

1,600

25

가

800

”

(

)

(4)

12:30

가

13:18

13:53

11:11

14:08

“

가

”

가

(1) 가 1999. 10. 25. 09:00
 19,350 , 2 가 11:00 19,400
 11:49 18,200 , 11:59 가
 16,600 (가 19,500 85%,) 가
 , (2) 가 1999. 10.
 25. 09:00 11,850 , 2 가 11:04 11,800
 11:49 11,350 ,
 11:59 가 10,100 (가 11,850 85%,)
 가 .

(1) 50,000
 1999. 10. 26. 10:49 11:10 14,350 16,300 ,
 15,650 16,350 , 12,950 16,400 , 1,500 16,450 , 5,550 16,800

(2) 4,530
 1999. 10. 25. 11:43 400 11,200 , 1,000 11,250 , 13:39
 3,130 10,500 .

2.

가.

, 가 가

,

,

가가

가

.

.

,

(1)

가 .

(3)

, 가

가

3.

, 1
1

2001. 10. 25.

,

가

2001. 11. 7. (2000가 68769)

25 () 2001 11 7

2 8

“

3.

:

: 1.

2.

22

3.

1가 25

4.

139

5.

3가 63-1

2 5

6.

1가 61

7.

7

8.

116-25

9.

14

7 9

: 2001. 10. 10.

: 1.

50,000,000 ,

150,000,000 ,

100,000,000

1998. 7. 8.

2001. 11. 7.

5%,

25%

2.

3.

4

1

4. 1 가

: 1.

500,000,000

1998. 7. 8.

2.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1998. 7. 9. ,

3.

80,000,000 ,

300,000,000

1998. 7. 8.

5%,

25%

: 1.

49, 88, 89, 12 98, 13, 26 , 66 1 10 , 11 6 10,
1 7 , , , 가 1

가.

(1) 1997. 8. 가 (,)
(,) , ,
가 ,

(2) () (,) 가

(3) () ,
() ()
() ; ()
() ; ()
()
()
()
()
()
()

(1) 2 1998. 5. 26.
가 , 8

(2) ,

가 0.19mg/kg,
가 0.02mg/kg, 가 0.05mg/kg
(Formalin) (5
)
(3) 2 1998. 6. 18.
(4)
, 가 (140g × 9, 1998. 5. 23.),
(140g × 9, 1998. 6. 8.), (230g × 6, 1998. 6. 11.),
(230g × 6, 1998. 6. 11.), (3.1kg, 1998. 1.
21.) (1kg, 1998. 5. 9.
), (3kg, 1998. 3. 10.
)
(5) 1998. 6. 29. 가 0.03mg/kg,
0.15mg/kg, 0.05mg/kg,
0.14mg/kg, 0.01mg/kg,
0.02mg/kg, 0.03mg/kg
(6) , ,
, , 가
가
.
(1) 2 1998. 7. 7.
, ,
(
).
(2) , ,

() ,

가

가 .

(2) , 1999. 4. 1. 가

가

가 (2000. 5. 18.

, 2000. 9. 26.)

(3)

2.

가.

(1)

가

(27 4)

가

(

가 가

).

(2)

가).

(4)

(가)

가 가

가 (

1998. 7. 14. 96 17257).

13 1~59

66 32 , , ,

가 ,

,

, , , ,

()

,

,

.

,

,

가

가

()

가

,

,

가

가 ,

’
,
(가
,)
,
가
.
,
.
.

3.

가.

(1)

,
1998. 7. 8. 2001. 3. 9.
80,000,000 ,
,
300,000,000
(2) , 14, 15, 20, 24, 27, 32, 41, 42, 62, 65, 66 ,
,
, 가 ,
,
, 1998. 8. ,
2000. 3. ,
가
, 가 (,
,
) .

가, 1998. 7. 8. 50,000,000 , 150,000,000 , 100,000,000 2001. 11. 7. 5%, 25% 가 . 4. 2001. 11. 7.

1. : 1998. 7. 9.

2 (高) 8 「 」 () (50) 2 (43) 2 8 「

가 1 34 (가 10)

2. : 1998. 7. 9.

• 10

4

(43) 2 (高) 8 李 (50) 徐
, 盧

(43)

(43) 李 (53)

李 8

가

가, 134 10

盧 李

가 , 가 78

2 9,000

3. : 1998. 7. 9.

$$2 \left(\frac{1}{2} \right) 8$$

()

50)

43)

43)

53)

, ()

8

$$, \quad , \quad , \quad 1 \quad 34 \quad (10 \quad)$$

가 ' ' 가 ' '

41 (1 4

)

37 (1 5

)

kg 0.02~0.19mg

4. : 1998. 7. 9.

「發癌」10

- 2 (高) 8 () 李 50),
徐 43)

盧 43) 李 53)

, () 李 徐 8 - 1 34

(10)

- kg 0.01-0.02mg ,

李 가

kg 0.03-0.19mg

= 가 , 가 , ,

, = 가 ,

= 가

5.

가. 1998. 7. 9.

「」10

2 () 8

()

50) 2 , 43),

53)

8

가

1 34

, 가 10

-

「

가 ㄴ 「

가 ㄴ 「

ㄴ 「

ㄴ

「 ㄴ

1kg

0.03-0.19mg

「

가 ㄴ 「

」

「

가 ㄴ

0.05mg

0.02mg

.

1998. 7. 10.

?

가

,

1 34

.

가

가

.

7 9

8

,

가

,

,

,

10

가

.

2 () 8 , , , ,
 ()
 2
 8 41 130 (가
 10) 2
 78 (가 2 9,000)
 가 , 가 , ,
 가 , 가
 8. : 1998. 7. 9.
 3 社
 가 3
 「 」
 2 () 8 ()
 43)
 43) 53)
 8
 가 , 가 , , 134
 가 10 , 가
 41 , 가 37
 1kg 0.02-0.19mg

: 99가 19514 ()

:

, ,

: 1.

31

2.

3.

2, 3

31 ()

, , , ,

: 2000. 12. 21.

: 1.

9

[]

2. 100,000,000

1999. 9. 19.

1999. 11.

18. 5%,

25%

.

3.

4. 2 가 .

:

: 1.

가. 1993. 2. 20

, 1993. 3. 3.

, ()

, ,

(: , :).

.

(1)

1

1

, 2

2

2m

4m

5

8

가

(' 2 , ' ,)
) , 가, 가 가
 .
 (2) 가 16 ()
 1993. 9. 24. 가
 156 1 65.8m² 8 () 434.9m² 1988.
 9. 1. 1993. 8. 31.
 198,476,000 , 1993. 12. 14. 280.4m² 1993. 9. 1.
 12. 31. 10,582,290
 , , 1994. 1. 17. ' 2
 , 212.6m² 가
 105,931,430 8,432,670 ,
 1994. 2.
 94 8928
 .
 (3) 1996. 10. 25.
 가
 , 11 1[3
 3 “
 () ”
], 2(
), 3 2
 가 8
 가 ,
 95 8928 ()
),
 1996. 10. 25. “ () 2

” (

가

).

(4)

96 43298

1998. 2.

5.

1998.

9. 8.

, 98 16897 1999. 5. 28. 가

,

.

94 8928

(7 1, 2, 3) ,

11 1 3

.

,

가

,

.

, ,

‘ 가

가 ,

가

,

, []

1999. 9. 19.

9

[]

(‘ ,)

.

[] 1 1, 2 8 1, 2(), 1 1 5, 3 19, 3 20, 24, 27,
37, 4 15, 16, 17, 5,

2.

가.

가

가

가

114,364,100

38,439,770

11

1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9

[]

가

가

, 가

가

가 .
가
500
() :
가
1999. 9. 19. 9
가
2

: 2001 11989 ()
:
: 1.
31
2.
3.

2, 3

31

: 2001. 10. 25.

1 : 2001. 1. 18. 99가 19514

: 1.

1

1, 2

가.

21:00

「MBC」 [2]

1

1999. 9. 19.

2001. 11. 29.

5%,

25%

.

(

)

2.

1, 2

5

1

,

.

3.

1

가

: 1.

(

)

9

[3]

1

5

1999. 9. 19.

5%,

25%

(

).

2.

1

: 1.

가.

(1)

1993. 2.

20

, 1993. 3. 3.

(2)

1997. 12.

1999. 9. 19. 9 MBC TV 「 3

“

가

가 ‘ ,

‘

“

가

가 “

“ 가 ,

가

... 가

2 16 30 93

가

81

“ 가

가

“

“

가

500

가

“

가

“

([1]

).

(1) 1 1

, 2 2 2m

4m 5 8 가

(2

) , 가,

가 .

(2) 가 16 ()

1993. 9. 24. 가

156 1 65.8m² 8 () 434.9m²

1988. 9. 1. 1993. 8. 31.

198,476,000 , 1993. 12. 14. 280.4m² 1993. 9. 1.

12. 31. 10,582,290

, 1994. 1. 17. 2

212.6m² 가

105,931,430 8,432,670

1994. 2.

(3) 1994. 2. 28.

94 5986 1994. 6. 16. 1

1995. 4. 13. 10 1 10 3

1 33 1 24 81 1

1

(4)

7 1, 2

19 31 .

5 1994. 11. 3. 10:00 11 1 33 1

24 38 24

11 1 3 .

(5) 1995. 5. 18.

212.6m² 가

95.0m² 11

1{1969. 8. 1. 가 3

“ (

)

” 64, 64-1, 64-3, 64-4

가 3 64-2가

1 가

가

(

) }, 3{1969. 12. 4. 09:30 가

1 , ,

, , , ,

가 }

2

가 8

가 “ 가 1993. 9. 24. 105,931,430

() 46,869,700 1993. 12. 14.

8,432,670 () 3,764,560

.” .

(6)

11 1 3 , 1996. 10.
25. 96 8928

가

11 1, 2, 3 2

(7)

가

. 1997. 2. 4. 11 1998. 2. 17. 21
7 34
1 3 64 1 4
2

(8)

1998. 2. 25.

1998. 6. 9. 24

65 1, 2 95 13

1

(9)

11 1 3
63 4

가

가

5

가

(10)

1998. 3. 27.

1998. 9. 8.

96 43289

가

, " 가

1993. 9. 24.

97,184,800

()

62,052,260

1993. 12. 14.

8,031,120

()

5,125,140

, 1994. 1. 17.

가

9,148,180

5,840,950

."

(11)

98 16897

41

5

1999. 5. 28.

(12)

,

,

가

가 ,

가

, [1]

1999. 9. 19.

9

[1]

[]

1

,

3

8

,

1,

3,

4,

5

(가

),

,

2.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

.

,

, 가

,

가

,

.

(1)

가

,

.

(2)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가

,

,

가 가

가

.

“

가

.”

“

.

81

,

.”

,

가

가

,

‘

,

‘

,

,

가

가

“

81

,

.”

,

가

가

가

가

가

.

가

11

1 3

가

가

11

3

11

1 3

가

,

가

,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11

1

3

5

가

,

가

11

1

3

(3)

3.

가.

가

1999. 9. 19.

25%

2001. 11. 29.

5%,

가 .

764

가 .

9

[2]

4.

1

1

2001. 11. 29.

1

1

2

1999. 9. 19. 9 ‘ ’
가

,

,

.

,

. .

3

9 19 9 「MBC」 “ 가

‘

,

,

”

“

81

,

”

가

,

81

,

가

가 “

” “

,

.”

가

2001. 12. 19. (2001가 8399)

25 () 2001 12 19

가

“ 1 ,

” .

2

“

가

“ ” “ ,

가

가

” .

“

가

“ ”
 “ ”
 2001. 1. 20. 『 ‘ ’ 』

: 2001가 8399 ()

: 1.

2.

: 1.

2.

1가 25

: 2001. 12. 5.

: 1. 10,000,000 , 20,000,000

2001. 1. 20. 2001. 12. 19. 5%,

25%

2.

3. 60%

4. 1 가

: 1. 100,000,000 2001. 1. 20.

5%, 25%

2.

1 가 [] 38

, 2 14 1

: 1.

[: , 1, 2 , 1, 2 ,]

가.

(1) , 19 . 1988. 12. MBC 가 ' ' 가 1990. MBC 10 가 , 1990. 1991.

KBS 가 , 1989. ' ' 1992.

' N.EX.T', 1999. ' , 2000. ' ' ,

, 가

(2) , 19 . 2 2000. 4.

12. , 1996.

가 .

(3) (' ')

(1) 1999.

(2) 2001. 1. 11. TV(m • net) ' ' , 2001. 1. 13. 가

8 가

(1) 1 (' ')

, 2001. 1. 20. 1 『 ' ' 』

, 36 (

' ') 『 』 『

9

』

(2)

(

).

2.

가.

(1)

(2)

(1)

가

PD

TV

(2)

가

(3)

3.

가.

10 “ 가 가 ,
가 ”, 17 “ ”, 21 4
“ .
.

” , 316 , 317

’ ,
(
) 가 .

’
가 가 ,
가
.

(
1998. 9. 4. 96 11327).

’
가

.
’
.

’
9 』 “가
. 1 가

” , “ 가
가 ”, “

가 . 가

" " ' , 가
 ' " " 2001
 " " 가 , 3-4
 " ,
 가 (,
 ,) .
 , 가
 ,
 .
 (1)
 (가)
 , ' , ' , ,
 가 .
 가 가
 ,
 , 가 ,
 가 (가
) .
 , ,

()

가 1996.

가

(

),

가

가

가 .

(2)

가

3

가 .

1999.

2001. 1. 11.

TV

, 2001. 1.

13. ‘ 가 8

가

가

PD

가

(3)

가

가

(

).

가,

가 ().

가).

4. 가.

가

가 가

가

20,000,000 10,000,000

2

5.

, 10,000,000 ,
20,000,000 (2001. 1. 20.)
(
) 5%,
25% 가 ,
2001. 12. 19.

1

9
가 (33) . 1 가
'가 ' (24). 96
가 15 가 .
173cm
1
가 .
가 .

4

가

가

가

가

“

가

”

2001

가

3-4

4

가

&

<

>

2

2001. 1. 20.

『

9

가

가

』

1

‘가

(33)

‘

가

가

“

가

”

2001

가

3~4

가

가

1

1999

가 2000. 12.

2000. 12. 29.

가

가

가

가

가 2001

가

3~4

가 가
가 가
가

2000. 6. 15. { 99 3282, 99 3299() }
2002. 1. 22. { 2000 37524, 2000 37531() }

1 () 2002 1 22 8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
가 , ”
“ ”
가
가
 , 가
 ,
 ,
2 “
가
 , 가
 ,
가 가
 , 가
가 ,
 , 1 “
가 ,
가 ,

가 .”

(1

6 305 321).

1997 2 , 3 , 8 『 가. 「

』 가 『

』 『

』

， ， ，

，

， · ·

， ，

， 97

2

: 99 3282 ()

99 3299() ()

， : 1.

2.

3.

4.

5.

6.

7.

8.

9.

, : 1.
2가 1 38

2.

3.

2가 1 38

: 2000. 5. 4.
1 : 1998. 11. 25. 97가 70274, 97가 70281()
: 1. 1

가.

20,000,000 , 30,000,000 ,
10,000,000

가 , “ ” “ ” “ 가

”

,

,

,

,

.

가.

(1) , , , , , , , :

20,000,000

(2) : 30,000,000

.

:

10,000,000

4.

,

,

,

764

가 .

가,

,

,

,

1 가 7

38

14 1 .

5.

,

20,000,000 , 30,000,000 , ,

10,000,000 ,

1997 2, 3, 8

1997. 8. 1. , , , , ,

1997 3 1997. 3. 1. ,

2000. 6. 15.

5 ,
 2 5 가 ,
 2 가 .
 ,
 ,
 ,
 ,
 , 1
 1
 ,
 .
 2000. 6. 15.

1997 2 『 가, 「 」 가, 3
 『 』 8 『 』
 가 ,
 , , , 5 ,
 , , , 2
 5 .(‘ ’ ’ ’)
 1997 2 21 25 『 가, 「 」 가, 3 26
 31 『 』 8 20 23 『
 』 ,
 , 「 」 「 」
 ,
 , 가

가

1997 .

3 2
1

: 2000 37524, 37531 ()
:
8
(10)
: 2 (1)
:
2000. 6. 15. 99 3282, 3299
:

: 1.
가. 1

(1) (‘ ’)

1997 2 『 가, 가?』 , 1997 8
『 』 ,

3 『 가, 가?』
 (2) 1997 2 『 가, 가?』
 ‘勞’ 『 가, 가?』
 (‘
 ,) ‘ (.
 , ‘ ,), (‘ ,)

(3) 1997 3 『 1
 , 『 가 ‘
 , 『 가 , ‘
 , 『 (‘ ,
), (‘ ,), (‘ ,)
 , (‘ ,)

(4) 1997 8 『 가?, 가?』
 가?, 가?』

(1) “ , , , ,
 ,
 ,

(NL)
 가
 , 1994 3
 ,
 , ‘ , 1 2,240 ,
 , ,

가 , , ,

1

. ()
가
가 가
‘ ’
‘ ’
‘ ’
‘ ’
‘ ’
‘ ’
‘ ’
가

가,

가 .”

(2)

(가) “ 가, 가? ”

1)

2 10 , 가

, 가 .

2) , , , 1995 4 가

,

“ ” , .

() “ ”

1) , , ,

가 .

2) 가

가 .

3) 1995. 9. 1. 1996. 2. 29. 가 2,000 ,

가 7,000 , 10,400,000 , 21,170,430

1 2,240

가 ,

4) 가 1996. 11. 10. 11,400,000 ,
 18,550,000 , 1,450,000 , 9,685,810 ,
 1995. 9. 24. 1996. 9. 30. 9,600,000 , 34,500,000
 9,500,000 34,478,660

5) 가 .

() “ ”

1) 1994 3 “
 ” 가 , 가
 가 .

2) 1997 6 1
 ,
 가 1 ‘ . ’
 ‘ , 가 .

(3) , 가

“ 가 ,
 , ,

가

.”

(4)

“

가

가

가

21 1

21 4

가

,

, 10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

2.

가.

(1)

가

가

가

가 , 가
가
(1997. 10. 28. 96 38032 , 2001. 1. 19. 2000 10208).

(1999. 2. 9. 98 31356),

가 가 가 (2000. 7. 28. 99 6203).

(2) 21 1 ,
가

가 .
10 가 가
가 ,
가 , 21 4 ‘ .
.
.’

가 .
가 .
가 , ,
가
가 (1988. 10. 11. 85 29). “
”

가
가 (1996. 10. 25. 95 1473

), “ ”

가

(1998. 10. 9. 97 158

).

가

(3) , .

(私的)

가

(公的)

가

가

가

,

,

,

.

가

가

가

(

1999. 6. 24. 97 265).

(4)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가

가

가

가

가

(5)

가

가

가

(1)

(가)

106

1

6

1995. 11. 11.

, 1996. 12. 26. 06:00

가

가

20

1997. 1. 15.

가

가

가

. 1997. 1. 16.

, “ () ‘ ,

4 가
 . ()
 ,
 ,
 가

,
 . ()

20
 . ()

가
 . () ” (106 2, 1021).

, 1997. 1. 22.
 2 22 4
 () 1997 2 “ 가, 가? ”, 1997 3 “

”
 1997 2
 ,
 ,
 ,
 ,

가 , 1997 3
 ,
 ,
 ,

() 1997 2

• 367

106 2(), 3()

1 6

가 , 가 ,

(106 2) (106 3)

가

가

106, 107

106, 107

“ ”

가 ‘ , ,

‘ ,

가 가

가 , ‘ ,

, ,

가

.

() 1997 2

, “ 88 6

‘ ,

NL()

2 10

,

가 95 11

‘ , ‘ ,

가

, ‘ ,

, ‘ ,

, ‘ 5 · 18

, ‘ ,

. ”

, 2 3

,

가

.

.

“

”

“

,

,

” “ NL() ” “

”

3

“

”

.

가

,

,

1 . 가

3

106 4()

3 가

가

3

가

가

() , 1997 3 “ ‘ ,

1 2

12 28

() 가

, () , () 45

(), (

), (), (), (), (

), () .

” “

가 .”

가 “

”

가

“ ”

“ ”

() , 1997 3

가

() 1997 2

1997 3

106, 107

가

(2)

(가) 1997 2

(,)

, “ (95 4)
 , 25 (,
) ’
 . “ ’ “ ’ “ ’ “ ’ “ ’
 30 가
 ... 가
 ,
 .
 . ”
 , 1996. 12. 26. 06:00 가
 가
 , 가
 , 가 가
 가 “ 가
 ” “ ” “ ”
 , 가
 .
 가
 ,
 가
 () 1997 3
 “ ’ 1 2
 , “ ’ “ ’ “ ’ “ ’
 . 12 28 (

) 가 . ‘ ’ , () , () 45

. (), (), (), (), (), () .

’
.”
.”
1997. 1. 9.

가 ’ “
” “ ()

.” 1964 ‘ 4 8 ’

“ ”

가 ‘ 가 ’

가

가

() 1997 8

” “ 94 3 ‘

” “ ”

"

23

가

가

가

1 ~ 3

40 ~ 50

가 ‘

가

가

(4)

1997 3

“ ()

1가 18 ‘ ’

” “

’ ’

... ”

“ ‘ ’ .

” “

가 1 14 KBS

” .

“ 1가 18 ‘ ’

” “

‘ ’ .

”

가

가 ‘ 가

’

가

가

“ ‘ 1 6

’ ”

’

(5)

1997 8

“ ()

‘ ’ , ‘ ’ , ‘ ’ 97
5 1 ‘ ’
. ”
‘ ’ 1997 5 1
, ‘ ’ 1997 5
. ‘ ’ 1997 5
가 가

‘ ’ ,
(1996. 2. 9. 95 2333).
‘ ’ 1997 6 (5) 1

가 1 “ . ”
가

3.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 ,

·
2001. 8. 30. (2000 36)

가 () 2001 8 30 714 2
가
“ 714 2
”
“ 21 2 가
,

가 “ , “ 가
,
가 “ .